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

2003. 12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2001년 이후 국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정 및 경제학자, 시민단체, 기업관련 단체 등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서로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2001년 말에 1%포인트, 금년 말에 2%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선진국들이나 주변의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편인지,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 투자 및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촉진되는지 등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정책동향을 정리하고, 법인세율 이외에 감가상각제도,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감안한 기업의 유효세부담을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인세 인하정책은 경기부진 타개를 위한 임시방편이나 일시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감가상각제도 및 각종 투자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이고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 및 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개편을 통해 법인세 인하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법인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세입확충 및 세출통제 강화를 위한 조세·재정제

도의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경쟁국들의 조세정책 동향 및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적절한 실시 시기를 놓쳐서도 안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진수 박사, 박형수 박사, 안종석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세미나 참가자 및 익명의 평가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통계처리에 수고한 심재진 주임연구원, 김정현 주임연구원, 원고정리에 수고한 장정순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인근에 있는 경쟁국들의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 그 자체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설비투자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유효세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한편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법인세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주요국의 정책동향

최근 G-7국가들, OECD 회원국, 아시아 주요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율 30%를 하한으로 세율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국세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인 주민세를 합하면 총세율은 27.5%가 되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법정 법인세율이 낮으나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 특히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함께 고려한 유효세율의 주변국과의 격차는 명목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 유효세부담의 국제비교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와 주변의 경쟁국들에 대한 투자를 각각 1단위씩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은 감가상각 속도에 따라 24.9~30.6%인 데 비해 중국은 10.6~17.5%, 싱가포르는 5.3~10.4%, 말레이시아는 6.9~18.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콩의 경우 한계 유효세부담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명목세율의 차이와 함께 감가상각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주변국들보다 높으며, 그 세부담의 격차는 명목세율 비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다.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가 유효 법인세부담에 주는 영향을 보면 현행 27%에서 2%포인트씩 법정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계 유효세율도 1.9~2.2%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낮추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은 20%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며,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목표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3) 법인세부담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를 보면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모두 법인세부담의 경감이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분석 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OECD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명목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법인세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경상이전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3~0.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일한 방법의 법인세부담 경감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연 0.02~0.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17개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은 설비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욱 뚜렷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재원을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4)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수입이 매년 1.8~2.5조원 정도 감소하여 4년 합계 약 8.5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수입 감소는 통합재정수지를 연간 1.4~2.2조원 악화시켜 4년간 총 7.2조원의 재정압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는 시기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미루어져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조원 정도, 2007년에는 2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 GDP의 0.2~0.4%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2008년까지 기준선 전망보다 약 7.2조원 증가하여 명목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의 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시사점

기업의 법인세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 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명목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려 한다면 명목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 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 론 ····· 17

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 20
1.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쟁 ····· 20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 25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 현황 ····· 34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 34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 38
3. 법인세 세수 현황 ····· 41
4. 조세부담률 ····· 45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 50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 50
2.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 ····· 59
3. 시사점 ····· 65

Ⅴ. 주변 경쟁국과의 유효법인세 부담 비교 ····· 68
1. 한계유효세율 분석 ····· 71
2. 평균유효세부담 분석 ····· 90

Ⅵ. 법인세 부담이 기업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00

1. 외국의 연구결과 ····· 101
2.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 ····· 114
3. 시사점 ····· 134

Ⅶ.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36
1.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136
2.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37

Ⅷ.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41

참고문헌 ····· 147

부록 1 ····· 154

부록 2 ····· 157

부록 3 ····· 161

표 목 차

<표 Ⅱ- 1>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2003년 기준) ····· 27
<표 Ⅱ- 2> G-7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2003년 기준) ····· 29
<표 Ⅲ- 1> 법인세 과세체계 ····· 38
<표 Ⅲ-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 ····· 39
<표 Ⅲ- 3>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 42
<표 Ⅲ- 4>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 ····· 43
<표 Ⅲ- 5>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 ····· 44
<표 Ⅲ- 6> GDP 대비 조세부담률 ····· 46
<표 Ⅲ- 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 48
<표 Ⅲ- 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 49
<표 Ⅳ- 1>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 ····· 51
<표 Ⅳ- 2>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 ····· 52
<표 Ⅳ- 3> 프랑스의 종량최저한세 구조(2003년 기준) ····· 53
<표 Ⅳ- 4>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계획 ····· 60
<표 Ⅳ- 5>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 61
<표 Ⅳ- 6> 벨기에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변화 ····· 63
<표 Ⅳ- 7>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 64
<표 Ⅴ- 1> 한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 78
<표 Ⅴ- 2> 중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 80
<표 Ⅴ- 3> 홍콩의 법인세 제도 및 관련 지표 ····· 81
<표 Ⅴ- 4> 싱가포르의 법인세제도 및 관련 지표 ····· 82

<표 Ⅴ- 5>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제도 및 관련 지표 ····· 83
<표 Ⅴ- 6> 한국의 한계유효법인세율-투자자 거주지에서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 ····· 84
<표 Ⅴ- 7> 중국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 85
<표 Ⅴ- 8> 싱가포르의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 86
<표 Ⅴ- 9>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 87
<표 Ⅴ-10> 일반기업의 한계유효세율 비교 ····· 88
<표 Ⅴ-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투자기업의
한계유효세부담변화 - 고속상각 ····· 89
<표 Ⅴ-12> 우리나라의 평균유효세부담-시나리오Ⅰ ····· 94
<표 Ⅴ-13> 우리나라의 평균유효세부담-시나리오Ⅱ ····· 96
<표 Ⅴ-14> 일반기업의 평균세부담-시나리오Ⅰ ····· 98
<표 Ⅴ-15> 특별우대기업의 평균세부담-시나리오Ⅰ ····· 99
<표 Ⅵ- 1>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104
<표 Ⅵ- 2>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 ····· 104
<표 Ⅵ- 3> 유형별 세율의 국가간 비교 ····· 106
<표 Ⅵ- 4> 자본관련세 감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107
<표 Ⅵ- 5> 모의실험⑥의 캐나다 장기균형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 108
<표 Ⅵ- 6> QUEST Ⅱ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 111
<표 Ⅵ- 7>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 113
<표 Ⅵ- 8> 이인실 등(2002)의 모의실험 결과 ····· 117
<표 Ⅵ- 9> 전영준(2003)의 모의실험 결과 ····· 118
<표 Ⅵ-10> 횡단면 자료(국가별 1982~2001년 평균) ····· 121
<표 Ⅵ-1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127
<표 Ⅵ-12> 패널 회귀분석 결과 ····· 129
<표 Ⅵ-13> 장기 설비투자 식(ECM) 추정 결과 ····· 133

<표 Ⅶ- 1> 기준선 전망 ····· 138
<표 Ⅶ- 2> 감세방안에 따른 세제개편시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가정 ····· 139
<표 Ⅶ- 3> 국세 감세시 통합재정수지 전망 ····· 140

그 림 목 차

[그림 Ⅱ- 1]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 30
[그림 Ⅳ- 1] G-7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 57
[그림 Ⅳ- 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 58
[그림 Ⅳ- 3] G-7 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 61
[그림 Ⅳ- 4] 기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 63
[그림 Ⅳ- 5]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 65
[그림 Ⅴ- 1] 한계유효세율의 개념 ····· 72
[그림 Ⅵ- 1] 국가별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 123
[그림 Ⅵ- 2] 국가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 ···· 125
[그림 Ⅵ- 3] 법인세율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131
[그림 Ⅵ- 4] 제조업의 설비투자 재원조달 추이 ····· 135

I. 서 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획기적으로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부담을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1년부터 여러 경제주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2001년 후반에는 법인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법인세 정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시장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데서도 오늘날 법인세 정책이 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낮은 세율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 개편이 심각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G-7 국가로 대별되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정책변화를 검토하는데 세부담의 직접적

인 비교보다는 명목 법인세율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우리나라 법인들의 투자에 대한 유효세부담을 측정하여 주변의 경쟁국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한다. '우리나라가 주변의 경쟁국보다 법인세부담이 높아 자본유치경쟁에 있어 불리하다'는 주장에서 법인세부담은 실제로 법인이 납부하는 유효세부담(effective tax burden)을 의미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인세율 인하가 바로 유효세부담 인하로 연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부담은 법정 법인세율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의 법정 법인세율이 같다고 하자. 그런데 A국에서는 투자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데 비해 B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면 A국에 투자한 기업이 납부하는 유효세부담은 B국에 투자한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 A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A국과 B국이 동시에 법인세를 폐지한다면 각국 경제는 법인세 부과 이전의 균형상태로 돌아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A국에 투자된 자본의 일부가 B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 법인세율보다는 유효세부담을 분석해야 법인세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정 법인세율이 변함에 따라 유효세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계 유효세율과 평균 유효세율로 구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평가한다.

셋째, 법인세부담의 변화가 기업의 설비투자, 세수 및 국가재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유효세부담에 영향을 주더라도 기업이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세부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법정 법인세율을 변화

시킴으로써 투자증대를 유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동비용 등 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조세정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가상적인 경우지만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거주지 과세원칙에 따라 자국 거주자의 투자에 대해 세계 어느 곳에 투자했건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과세한다면 다른 국가와의 세부담 차이가 투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부담의 변화가 투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법인세부담을 법정세율, 평균 유효세율, 한계 유효세율로 구분하여 법인세부담 변화가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만약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추정해 본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시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계해 보고, 이러한 세수 감소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그동안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현황 및 변화과정을 법인세율체계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제Ⅳ장에서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법인세율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들의 유효 법인세부담을 비교·검토하였고, 제Ⅵ장 및 제Ⅶ장에서는 법인세부담 변화가 기업의 설비투자 및 세수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향후 법인세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1.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쟁

가. 법인세 폐지론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2년 프리드먼(M. Friedman) 교수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 Freedom)』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프리드만은 이 책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가장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 누진적 소득세제와 상속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와 결합하고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를 단일세율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1].

최근에 와서는 2001년 5월 미국의 오닐(P. O'Neill) 재무부 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견임을 전제로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였다[2]. 그의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기업이나 사업체가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즉, 기업들은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개인 사이의 중개자(intermediary)

---

1)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소득세의 구조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소득과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상태에서 면제수준보다 높은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flat-rate tax)이다. 기업들이 그들의 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주주들이 자신들의 소득신고에 그 소득을 포함시킨다는 요건하에서 단일세율과세를 법인세의 폐지와 결합해야 할 것이다. ....." M. Friedman(1962), p. 174.

2) Financial Times 2001년 5월 20일자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만약 이 중개과정을 생략하고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내재해 있는 모든 행정적인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법인세가 존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재무・배당결정에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또 다시 과세된다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폐지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74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할 때였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검토될 당시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에 대한 과세로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그후 법인세 폐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1년 11월 최 광 교수가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4]. 최 광(2001)은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던 당시의 경제적 상황의 긴급함을 지적하면서 세율조정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법인세의 폐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법인원천소득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 대하여 소득에 상응하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물가상승 억제나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3) 강만수(2001).
4) 최 광(2001).

최 광 교수의 법인세 폐지 주장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특히 최 광 교수의 주장이 제기될 당시에는 언론과 야당이 침체된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법인세 폐지론은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검토

법인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각국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법인에 대한 과세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법인본질론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며, 따라서 법인은 독립적인 소극적 조세주체가 된다. 즉,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인 이상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는 관계없는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법인세인 것이다. 결국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상이한 두 개의 조세주체가 존재하므로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한번 과세하고, 법인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되어 그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각각 주주의 귀속이익이 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즉,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의 선납분이 된다는 관점인 것이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법인의제설의 입장에 서서 법인과 그의 구성원인 주주를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는 것은 법률적인 논리전개상 편의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을 통해 가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또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 폐지론은 법인의제설에 논거를 두고 있다.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가에 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법인세 폐지론 검토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는 법인 이윤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기자본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과세하는 부분요소세(partial factor tax)의 성격을 갖는 세금이다. 이는 법인세의 과세베이스가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는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간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법인부문에만 부과하는 세금은 장기적으로 법인부문에서 비법인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는 생산요소의 결합을 왜곡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자본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자본의 사용을 줄어들게 하여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 배합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5]. 따라서 법인세가 폐지되는 것이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5) 곽태원(2000).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 폐지론은 근본적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개인소득세만 한번 납부하면 되는데 법인 소득의 경우 법인세도 납부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주주단계에서 개인소득세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가 바로 법인과 비법인 부문간, 자본과 노동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세계 각국은 배당세액 공제, 배당소득 면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 국가 중의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은 고전적인 이중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국에서 법인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고전적인 과세체계[6]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세액의 2/3 정도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고전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이중과세가 존재하므로 법인부문의 이중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효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세 폐지론은 또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행위 자체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법인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편에 속하며, 그 자료들은 부가가치세 및 주주, 임직원의 소득세 과표를 포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법인의 회계자료를 수집·분

6)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특수한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안종석(1997) 참조.

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인세를 폐지하면 세무조사를 위해 입수하여야 할 정보 중 상당부분이 국세청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세무감사는 회계감사를 보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법인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법인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세수감소의 문제이다. 배당세액의 일부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법인세수 감소액이 현행 법인세액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소득이 전액 배당되는 것도 아니고 원천징수만으로 배당세액 납부의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중 일부분(1/3)은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세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수감소액만큼 세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7].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가. 법인세율 인하 주장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법인세 폐지는 근본적인 조세개혁(fundamental

7) 물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tax reform)의 일환으로서 주장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투자 및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는 결국 법인세율을 영(零)으로 인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주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논거를 갖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주장은 주로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해 있을 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체감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 재계, 학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법인세가 기업의 순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의 관점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여서 외국의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8].

8) 그 밖에도 법인세는 기업가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Lee and Gordon(2003) 참조.

<표 Ⅱ-0>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기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법 인 세 율	27.0	30	17.5	22	25	28
지방세 포 함	29.7	33	17.5	22	25	28

자료 : 각국 인터넷

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론

법인세율 인하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은 대체로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율의 국제간 비교,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살펴보자.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세율만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되고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9].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는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로 인하여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재투자하게 된다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2001년에 들어와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Friedman and Lav(2001)는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인 투자촉진 정책으로 적절한 것도 아니며, 반드시 투자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반박하였다. 그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확보된 자금이 신규투자에 충

9) D. Schneider가 이러한 현상을 최초로 Taxation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들었다. 또한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1년 6월 말 기준으로 6조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감세정책의 경우 정책 입안에서 시행 또는 효과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현재와 같이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은 상황에서는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자칫 경기조절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수요창출 효과가 확실하고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정지출 확대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로 미국(35%)이나 프랑스(33.3%) 등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많아 법인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요 자본수출국들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해 거주지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이들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살펴본다[10]. 법인세는 세수규모로

10) 미국에서도 2001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Friedman and Lav(2001)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2001년 한 해 동안 600억달러에 달하는 민간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볼 때 국세 중 점유비가 19.0%에 달하는 기간세목으로서 세수감소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자재정하에서의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적자재정하에서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 민간 소비나 투자를 그만큼 축소하게 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수반하게 되어 감세정책의 주요 목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표 II-1> G-7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기준)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법 인 세 율	27.0	35.0	30	33.33	26.50	30.00	23.00	34.00
지방세 포 함	29.7	40.8	30	34.33	47.48	40.87	38.16	38.25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다. 법인세율 인하 논쟁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 설정

법인세율 인하론의 입장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Ⅱ-1]과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의미하는 유효세부담을 하락시킨다(①). 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며(②), 폐쇄경제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대되면 국내 저축과 투자가 증대된다(④).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투자여력(가처분소득)이 증대되면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국내투자를 늘릴 경우 세전수익률의 하락

9,000억달러의 중앙정부 재정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을 유발하는 데 비해 세계로 눈을 돌릴 경우 세전수익률의 하락 없이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켜 국내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된 사회에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12].

[그림 II-1]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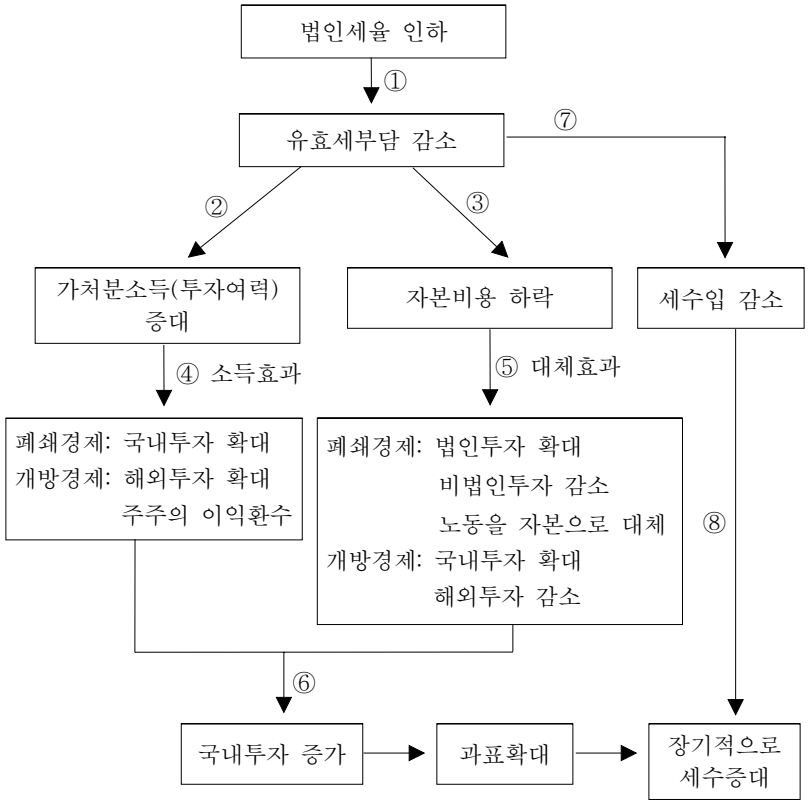

11)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다.
12) 본고에서는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Lee and Gordon(2003)에 의하면 법인세 정책이 기업가 활동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효세부담 감소는 또한 자본비용을 하락시킨다(③). 여기서 자본비용의 하락이란 비법인부문 대비 법인부문 자본비용의 하락, 노동비용 대비 자본비용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쇄경제에서는 비법인부문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법인부문으로 이동하며,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발생한다(⑤).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 소규모 국가의 법인부문 자본비용의 감소는 즉각적으로 그 부문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을 초래하며[13], 법인－비법인 부문간의 자본이동, 노동과 자본의 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그림은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을 매우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현실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유효세부담 감소(①),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자본비용 감소(③)를 통해 국내투자 확대, 해외투자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투자가 증대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세수입이 증대되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입 증가분이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율 인하 논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가 유효세부담의 변화를 통해 자본비용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폐쇄경제에서 비법인부문과 노동에 비해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법정 법인세율뿐만

13) 해외자본의 유입은 해외에 투자되었던 국내자본의 환입을 포함한다.

아니라 감가상각, 투자(비용)공제 등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A국에 비해 B국의 법정 세율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B국에 투자한 기업이 A국에 투자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자국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감가상각제도, 투자공제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세부담을 측정하여 자본유치의 관점에서 경쟁이 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Ⅴ장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

법인세율 인하의 타당성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은 법인세율 인하가 자국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킬 경우, 자본비용 하락이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한계적 투자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에서는 당연히 자본비용의 상대적 하락이 국내투자의 증대를 유발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비용과 투자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정치, 안보 그리고 국제투자의 경우 투자자 거주지의 과세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수요가 자본비용에 대해 비탄력적일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여도 투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거나 주주에게 배당되어 다른 투자처(해외 또는 미래 투자)를 찾게 된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제Ⅵ장에서는 다른 국가의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과 우리나라 자료만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내투자가 실질세부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준다면

단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은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세수입 감소가 공공부문 투자의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 축소폭이 민간투자의 증가 규모보다 클 수도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세수감소의 충격을 이겨내는 것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제Ⅶ장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입 등 재정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추정해 본다.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14]및 법인세 징수 현황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소득세 및 누진세의 특성을 갖고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여기에서 법인이란 민법상의 개념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물론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과 같은 법이론에 따라 다른 입장이 견지될 수 있다[15]. 우선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권리의 주체는 본래 자연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을 의제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인(人)

14)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및 세수입 현황과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인세제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독자는 본장을 읽지 않아도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15)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이외에도 법인부인설이 있다. 법인부인설은 사회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종국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자연인 이외에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실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부인설은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법인의제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의 결합체인 법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인과 동등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법률적 성격에 따라 법인세의 성격도 달리 설명될 수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은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6].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설립 당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내용이 영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신용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일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2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선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15%의 세율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7%의 세율로 과세하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세율은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12%의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17]을 초과할 때 그리고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분할로 인

17)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중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18].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그 법인이 해산될 때 그 법인의 잔여재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국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해산이나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없어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적용을 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부가적으로 법인세와 함께 징수된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와 세율은 아래의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8)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표 III-1> 법인세 과세체계

과세소득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각 사업연도 소득	내국법인	일반법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익금총액 - 손금총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조합법인 등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 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 - 국내발생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세의 외항소득		내국법인과 동일
청산소득	영리 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 총액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조합법인 등 : 12%
			분할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 자기자본 총액	
			합병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 자기자본 총액	

주: 1. 최저한세는 15%(중소기업의 경우는 12%)임.
2.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됨.

자료: 조세편람사, 『조세편람』, 2003.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1949년 11월 법인세법(법률 제62호, 1949. 11. 7)이 제정된 이후부터 독자적인 법안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세 도입 당시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특별법인의 경우 2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율 체계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표 Ⅲ-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

개정연도	비공개·비상장법인[1]	공개·상장법인[1]	비영리법인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동일	500만원 이하 20(15[2])%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이하 20(25[3])% 500만원 초과 27(3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4])% 300만원 초과 30(25[4])% 500만원 초과 40(35[4])%	500만원 이하 20(25[3])% 500만원 초과 32(35[3])%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40%	5천만원 이하 25%[5] 5천만원 초과 33%[5]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8%	5천만원 이하 22%[5] 5천만원 초과 33%[5]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1]	비영리법인	공공법인[7]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30(33[6])%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0(33[6])%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1998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주: 법인세법 개정연도 기준으로 적용연도는 개정연도 다음 해부터임.
1)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1982년까지 기업의 공개 유무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1982년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공개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 ) 안은 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임.
3) ( ) 안은 대주주 지분율 3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율임.
4) ( ) 안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임.
5) 대주주 지분율 35% 이하인 법인에 대한 세율로서 그 외에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의 세율로 과세함.
6) ( ) 안은 비상장 대법인에 대한 세율임.
7) 198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에 포함하고 5%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0.
조세편람사, 『조세편람』, 2003.

1975년 이래 4년간 비공개·비상장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3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20%, 30%, 40%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만 공개·상장법인과 비영리(학교)법인의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0%와 27%의 2단계 세율구조를 유지하였다. 1978년말 법인세법 개정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5%, 25%, 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 공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율 3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25%와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구조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소득계급과 더불어 법인유형에 따라 세율을 달리함으로써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법인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980년말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법인세율 구조를 25% 및 40%의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과세표준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인하하였다. 한편 1982년에는 비공개·비상장법인과 공개·상장법인간의 세율 격차를 폐지하는 등 법인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19].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981년에 22%와 38%로 인하하였던 세율을 1982년에는 다시 20%와 30%로 인하하였다.

1988년에는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세율은 여전히 20%와 30%의 2단계 구조로 1990년까지 적용되었다.

1990년말 세법개정에서는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 최고 세율이 34%로 인상되는 대신 과세표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

19) 공개·상장법인 중 대주주 지분율이 35% 이하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1993년말 세법개정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세율을 다시 18%와 32%로 인하하였다. 이어서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율을 18%와 30%로 인하하였으며 1995년에는 다시 한 번 이를 16%와 28%로 인하하였다.

또한 2001년말 세법개정에서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또 다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여 1억원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 법인세 세수 현황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이다.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13.5%, 1998년에 15.9%, 1999년에 12.4%, 2000년에 19.2%, 2001년에 17.7%, 그리고 2002년에는 18.5%를 기록하였다.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소득세에 비하여 법인세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여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20].

20) 익명의 평가자 중 한명의 지적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는 1년의 시차를 가지고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고 있다.

<표 III-3>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인세	94,247 (13.5)	107,758 (15.9)	93,654 (12.4)	178,784 (19.2)	169,751 (17.7)	192,432 (18.5)
소득세	148,679 (21.3)	171,940 (25.4)	158,546 (21.0)	175,089 (18.8)	186,630 (19.5)	191,605 (18.4)
상속증여세	11,612 (1.7)	6,796 (1.0)	9,012 (1.2)	9,889 (1.1)	9,484 (1.0)	8,561 (0.8)
부가가치세	194,880 (27.9)	157,068 (23.2)	203,690 (26.9)	232,120 (25.0)	258,347 (27.0)	316,088 (30.4)
특별소비세	30,364 (4.3)	22,115 (3.3)	27,133 (3.6)	29,846 (3.2)	36,336 (3.8)	42,882 (4.1)
기타	219,495 (31.4)	212,300 (31.3)	264,545 (35.0)	303,619 (32.7)	297,380 (31.0)	288,110 (27.7)
총 국세	699,277 (100.0)	677,977 (100.0)	756,580 (100.0)	929,347 (100.0)	957,928 (100.0)	1,039,678 (100.0)

주: ( ) 안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2001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급별로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우선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결손법인이 8만 5,607개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결손법인이 법인세 총세액의 1%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총세액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및 가산세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6%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은 12만 3,384개로 전체의 51.3%를 기록하였다. 즉, 전체 법인의 과반수 정도가 16%의 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한편 이들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4,489억원으로 총세액의 3%에 불과하며, 법인당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364만원이었다.

28%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법인은 3만 1,361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다. 반면 이들 법인이 부담한 총

세액은 14조 3,227억원으로서 전체의 95.9%에 달하며, 법인당 평균 4억 5,67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28%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법인들의 과세표준을 좀더 상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인 법인은 전체 법인의 0.2%인 495개이며, 이들 법인은 총세액의 16.8%인 2조 5,023억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5%인 124개이며, 이들 법인은 총세액의 52.1%인 7조 7,810억원을 부담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619개 법인이 총세액의 68.9%인 10조 2,833억원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

(단위 : 개, 억원, %)

과표 규모	세율	법인 수	과세표준	총세액
결손	-	85,607 (35.6)	-	1,571 (1.1)
1천만원 이하	16	59,583 (24.8)	1,292 (0.2)	601 (0.4)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6	63,801 (26.5)	25,393 (3.9)	3,888 (2.6)
소 계		123,384 (51.3)	26,686 (4.2)	4,489 (3.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8	26,664 (11.1)	72,299 (11.3)	14,436 (9.7)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8	4,078 (1.7)	112,375 (17.5)	25,959 (17.4)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8	495 (0.2)	100,585 (15.7)	25,023 (16.8)
500억원 초과	28	124 (0.05)	329,967 (51.4)	77,810 (52.1)
소 계		31,361 (13.0)	615,227 (95.8)	143,227 (95.9)
합 계		240,352 (100.0)	641,912 (100.0)	149,287 (10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1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23만 1,809개로 전체 법인 수의 대부분인 96.4%를 차지하는 반면, 총세액은 1조 2,923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8,382개로 전체 법인 수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세액은 5조 3,44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35.8%를 차지하였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131개로 전체 법인 수의 0.05%를 차지하였으며, 세액은 2조 6,49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17.7%를 차지하였다.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수는 30개로 전체 법인 수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은 5조 6,42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37.8%를 차지하였다.

<표 III-5>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2001년 기준)

(단위 : 개, 억원, %)

세액 규모	법인 수	과세표준	총 세 액
1억원 미만	231,809 (96.4)	77,024 (12.0)	12,923 (8.7)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6,096 (2.5)	59,536 (9.3)	13,000 (8.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86 (0.5)	32,913 (5.1)	7,569 (5.1)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044 (0.4)	86,464 (13.5)	21,678 (14.5)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56 (0.06)	47,255 (7.4)	11,193 (7.5)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131 (0.05)	102,107 (15.9)	26,497 (17.7)
500억원 이상	30 (0.01)	236,613 (36.9)	56,427 (37.8)
합 계	240,352 (100.0)	641,912 (100.0)	149,287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수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인세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수 측면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폐지 또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법인세는 일부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세목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619개의 법인이 총세액의 68.9%인 10조 2,833억원을 부담하였다.

4.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97년에 19.5%, 1998년에 19.1%, 1999년에 19.5%, 2000년에 21.8%, 2001년에 22.2%, 그리고 2002년에는 22.7%를 기록하였다. 조세부담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1997년에 2.1%, 1998년에 2.4%, 1999년에 1.9%, 2000년에 3.4%, 2001년에 3.1%, 그리고 2002년에는 3.2%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의 조세부담률 증가의 약 1/3 정도를 법인세 수입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표 III-6>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인세	94,247 (2.1)	107,758 (2.4)	93,654 (1.9)	178,784 (3.4)	169,751 (3.1)	192,432 (3.2)
국세	699,277 (15.4)	677,977 (15.3)	756,580 (15.7)	929,347 (17.8)	957,928 (17.4)	1,039,678 (17.4)
지방세	184,057 (4.1)	171,497 (3.8)	185,862 (3.9)	206,006 (4.0)	266,649 (4.8)	315,257 (5.3)
조세계	883,334 (19.5)	849,474 (19.1)	942,442 (19.5)	1,135,353 (21.8)	1,224,577 (22.2)	1,354,935 (22.7)
명목GDP	4,532,764	4,443,665	4,827,442	5,219,592	5,515,575	5,963,812

주: ( ) 안은 명목GDP 대비 비율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1년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2.2%로 OECD 30개국 조세부담률의 평균인 2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서 47.6%였으며,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서 15.7%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에서 25번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1년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3%로 OECD 30개국 법인세부담률의 평균인 3.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서 9.4%였으며,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로서 0.6%였다. 우리나

라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과 독일의 법인세부담률은 각각 1.9%와 0.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데, 이는 이들 국가의 세법이 기업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기업주단계에서 과세하는 통과기업(pass-through entity)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7>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

	1995	1998	1999	2000	2001
덴마크	47.8	48.6	49.3	47.2	47.6
스웨덴	35.1	36.8	39.6	39.5	36.1
노르웨이	31.5	33.3	30.5	30.3	34.4
뉴질랜드	37.0	34.8	33.9	33.8	33.8
핀란드	32.7	34.5	35.1	35.2	33.8
아이슬란드	29.3	31.5	34.2	35.3	33.6
벨기에	29.9	31.3	31.0	31.6	31.4
영국	28.7	30.5	30.0	31.0	31.0
오스트리아	26.5	29.2	28.9	28.5	30.6
호주	29.7	30.8	30.8	31.5	30.1
이탈리아	28.2	30.0	30.9	30.0	29.9
캐나다	30.6	31.4	31.0	30.6	29.9
룩셈부르크	31.1	29.6	29.9	30.2	29.6
터키	19.8	24.3	25.5	27.7	29.3
프랑스	25.2	28.8	29.3	28.9	28.6
헝가리	27.3	25.8	27.3	27.6	27.5
아일랜드	28.1	27.7	26.9	27.0	25.6
그리스	21.9	24.4	25.6	26.7	25.5
네덜란드	24.4	24.7	25.2	25.1	25.3
포르투갈	23.7	24.8	25.3	25.5	24.5
폴란드	27.6	25.5	25.2	24.3	23.5
스위스	20.8	22.3	22.2	23.6	22.8
스페인	21.0	22.0	22.8	22.8	22.6
독일	23.3	22.1	22.9	23.0	22.2
한국	19.1	19.1	19.5	21.8	22.2
미국	20.7	22.0	22.0	22.8	21.8
체코공화국	23.7	21.3	21.9	21.9	21.3
슬로바키아	-	21.9	20.6	20.5	17.9
일본	17.6	17.0	16.6	17.6	17.0
멕시코	13.9	13.7	14.3	15.4	15.7
OECD 평균	26.8	27.3	27.6	27.9	27.5

주: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총세수의 명목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 2003.

<표 Ⅲ-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단위 : %)

	1995	1998	1999	2000	2001
노르웨이	3.8	4.2	3.1	5.9	9.4
룩셈부르크	7.5	7.9	7.0	7.2	7.5
핀란드	1.8	4.3	4.4	5.6	4.9
호주	4.4	4.9	4.9	6.5	4.5
체코공화국	4.9	3.7	3.7	3.8	4.2
네덜란드	3.1	4.3	4.2	4.2	4.1
뉴질랜드	4.4	3.8	3.8	4.0	3.8
이탈리아	3.6	3.0	3.3	3.2	3.6
벨기에	3.0	3.8	3.6	3.6	3.6
포르투갈	2.6	3.9	4.0	4.2	3.6
아일랜드	2.8	3.4	3.8	3.8	3.6
캐나다	2.9	3.6	3.6	4.0	3.5
영국	3.3	4.0	3.7	3.6	3.5
일본	4.2	3.7	3.4	3.6	3.5
그리스	2.0	3.0	3.2	4.4	3.4
프랑스	2.1	2.7	3.0	3.1	3.4
한국	2.5	2.6	2.1	3.7	3.3
오스트리아	1.5	2.1	1.8	2.0	3.1
덴마크	2.0	2.8	3.0	2.4	3.1
스위스	1.9	2.1	2.5	2.8	3.1
스웨덴	2.8	2.9	3.0	3.9	2.9
스페인	1.8	2.5	2.8	3.0	2.8
헝가리	1.9	2.2	2.3	2.2	2.4
터키	1.5	1.7	2.4	2.3	2.4
슬로바키아	-	3.5	2.8	2.9	2.2
폴란드	3.0	2.8	2.6	2.6	2.0
미국	2.6	2.6	2.4	2.5	1.9
아이슬란드	1.0	1.2	1.8	1.9	1.2
독일	1.1	1.6	1.8	1.8	0.6
멕시코	-	-	-	-	-
OECD 평균	2.9	3.3	3.2	3.6	3.5

주: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는 법인세의 명목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 2003.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동향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및 그 타당성에 대한 주요 논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장에서는 선진국에서부터 아시아 지역의 경쟁국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인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 검토한다.

1. 주요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

가. 주요 선진국

▣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 내국세법과 재무부 기본통칙에 의해 미국 내에 설립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모두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자신의 전세계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은 미국 영내에서의 사업과 관계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3년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는 <표 Ⅳ-1>에서와 같이 과세소득구간에 따른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35%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법인세 외에도 대부분의 주정부마다 각자 별도의 세율을 정하여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21].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 2003년

21)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Nevada, South Dakota,

현재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미시간(Michigan)주로서 1.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오와(Iowa)주는 가장 높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고세율은 7.5%의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는 뉴욕(New York)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42.5%, 전국 평균으로는 40.8%에 달하게 된다.

<표 Ⅳ-1> 미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

(단위 : 달러, %)

과세소득	세 율
50,000 이하	15
50,001 ~ 75,000	25
75,001 ~ 100,000	34
100,001 ~ 335,000	39
335,001 ~ 10,000,000	34
10,000,001 ~ 15,000,000	35
15,000,001 ~ 18,333,333	38
18,333,333 초과	35

한편 미국은 상당한 소득을 가진 법인들이 면세, 세액공제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감면 항목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체최저한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체최저한세는 다음 해의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속해서 이월이 가능하다. 대체최저한세의 계산은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출발한다. 과

Texas, Washington, Wyoming 등 5개 주다.

세표준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조세혜택(tax preference)항목을 가산하고 최저한의 개념상 재계산되어야 할 소득, 공제사항, 손실항목 등을 가감조정한 다음 결손금을 차감하여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금액이 잠정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tax: TMT)가 되며, 잠정최저한세가 정규 법인세액을 초과할 경우 잠정최저한세가 그 법인의 세부담이 되고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저한세로 인한 부담은 없게 된다.

▣ 영국

영국은 2001 회계연도까지 10~30%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2002 회계연도부터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1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단계 소득구간별로 과세하는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은 아래의 <표 Ⅳ-2>와 같다. 현재 최고 과세소득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세율은 30%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charge)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 Ⅳ-2>에 제시된 세율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조세부담이 된다.

<표 Ⅳ-2> 영국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2003년 기준)

(단위 : 파운드, %)

과세소득	세율
10,000 이하	0
10,001 ~ 50,000	23.75
50,001 ~ 300,000	19
300,001 ~ 1,500,000	32.75
1,500,000 초과	30

▣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적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영업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영업소득과 이에 귀속되는 손금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3년 현재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33.33%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에 대한 3%의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34.33%이다.

한편 프랑스는 75% 이상의 지분이 개인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38,12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연간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의 부가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액의 3.3%에 해당하는 법인이익 사회세(social surcharge)가 부과되므로 대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35.46%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법인의 연간 총거래액에 따른 종량최저한세(annual minimum lump-sum tax)를 적용하고 있는데, 총거래액에 따른 최저한세액은 아래의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프랑스의 종량최저한세 구조(2003년 기준)

(단위 : 유로)

총거래액	최저한세액
150,000 이하	750
150,000 ~ 300,000	1,125
300,000 ~ 750,000	1,575
750,000 ~ 1,500,000	2,175
1,500,000 ~ 7,500,000	3,750
7,500,000 ~ 15,000,000	15,000
15,000,000 ~ 75,000,000	18,750
75,000,000 초과	30,000

▣ 독일

독일의 경우 2000년도까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단일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2002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5%로 대폭 낮추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에 대해 추가적으로 5.5%의 공동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적인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가 된다. 그러나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200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도의 경우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27.96%가 된다.

한편 독일은 법인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대해 지방정부가 영업세(busines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세율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9.6%에 달한다. 영업세는 기본 연방세율과 승수(multiplier)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선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기본납세금액을 결정하고 이 기본납세금액에다 승수를 곱하여 실제 영업세액을 산출한다. 승수는 각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며, 최고 수준은 490%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베를린은 410%, 프랑크푸르트는 490%, 함부르크는 470%, 뮌헨은 490%이다. 영업세는 법인세액 산출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을 감안한 최종 법인세율은 평균 38.6%이다.

▣ 일본

일본의 현행 법인세율은 30%이며, 중소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 2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사업세가 9.6%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세액의 17.3%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세는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되므로 지방세

(법인사업세+주민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은 40.87%이다[22].

▣ 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28%의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으며[23] 법인세율에 대한 4%의 부가세(sur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함한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9.12%에 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0년 이후부터 법인세율 인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연방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는 여전히 2000년 기준 연방법인세율에 대해 4%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게 되면 2003년 현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4.12%에 달하게 된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추는 것과 아울러 과세소득 20만~30만캐나다달러(CAD)의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4].

캐나다에서는 또한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세율로 지방정부 법인

---

22) 일본의 법인소득에 대한 최종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우선 사업세를 부과하기 이전의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② 사업세를 손금산입한 후 소득=100÷(1+0.096)=91.24
③ 법인세액=91.24×30%=27.37
④ 주민세액=27.37×(도부현민세 5%+시정촌민세 12.3%)=4.74
⑤ 사업세액=91.24×9.6%=8.76
따라서 최종 세율은 ③~⑤의 합인 40.87%가 된다.
자료 : 稻垣光隆(2002).

23) 2000년의 경우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38%에 달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10%의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28%이다. 2003년의 경우에도 33%의 세율에서 10%의 리베이트를 적용하므로 법인세율은 23%이다.

24) 캐나다는 2004년부터 법인의 거의 대부분의 과세소득에 대해 21%의 실질적인 연방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의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균 세율은 12.5%에 달한다. 따라서 각 주마다 연방정부 법인세, 부가세 및 지방정부 법인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38.16~46.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퀴벡(Quebec)주로 38.16%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42.62%, 온타리오(Ontario)주의 최종 세율은 41.62%이다.

▣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2003년 현재 3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37%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2년도에 36%, 2003년도에 34%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또한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 법인세 이외에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법인세의 표준세율은 4.25%이나 각 지방정부는 1%포인트 내에서 세율을 증감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Ⅳ-1]에서는 G-7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법인세 최고세율만을 비교하였을 때는 캐나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과세소득의 35%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34% 및 33.33%로 높은 편이다.

한편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를 포함할 경우의 최종적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G-7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이 40.87%로 두 번째로 높다.

〔그림 Ⅳ-1〕 G-7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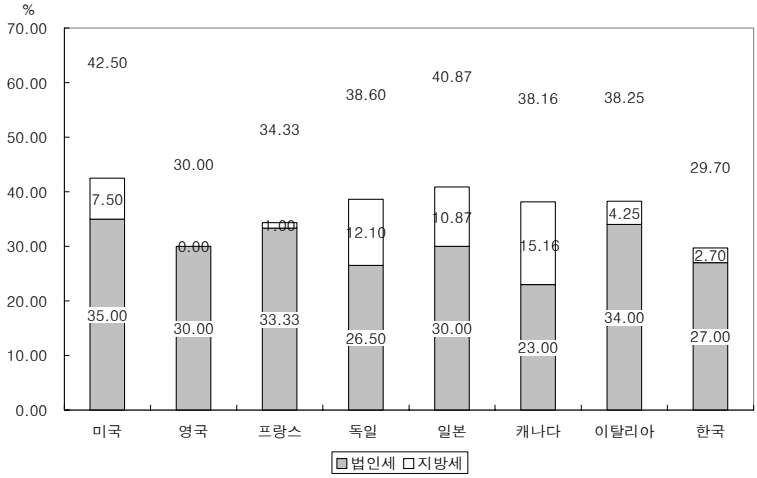

주: 미국은 뉴욕주, 독일은 전국 평균치, 캐나다는 퀴벡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나. 아시아 주요국

중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33%이다. 이 중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33%인 것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1997/98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1998/99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6%로 인하하였다가 최근의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2003/04회계연도부터는 17.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 현재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 income tax)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다르게 기업, 개인사업자, 조합 및 여러 형태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를 보면 우선 연간 과세소득이 5만NT달러 이하인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10만NT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Ⅳ-2]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기준으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는 최종 세율로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그림 Ⅳ-2] 아시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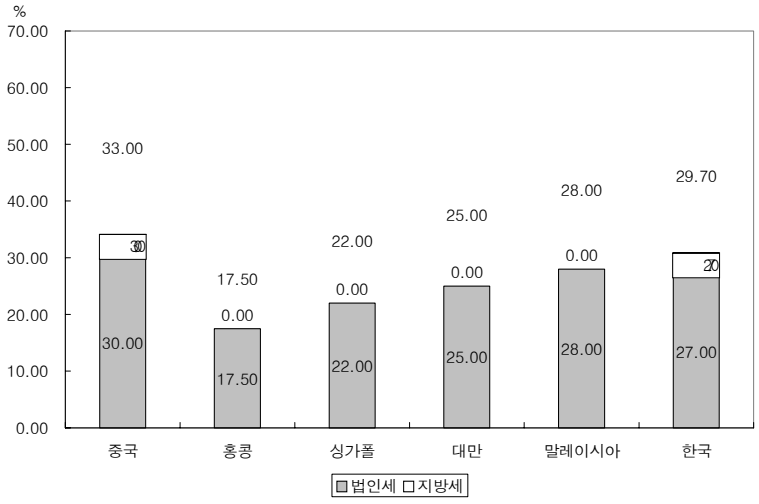

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3%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며, 대만은 이보다 낮은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법인세율 33%는

주로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15~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자본 유치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율을 비교한다면 33%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15~24%의 세율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홍콩 및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각각 17.5%, 22%로 낮은 편이다.

2.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

가. G-7 국가

미국의 경우 2001년 폴 오닐 장관의 법인세 폐지검토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구조는 1986년 세제개편 이후 2003년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는 2000년까지 38%의 높은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캐나다 내에서의 법인소득에 대해 10%의 리베이트(rebate)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연방법인세율을 28%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감안할 때 2003년도 기준 일반 연방법인세율은 23%로 2000년에 비해 5%포인트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21%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2004년도에 이루어질 21%의 일반 연방법인세율 적용에 앞서 2001년 1월부터 20만~30만캐나다달러의 소규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1%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Ⅳ-4> 캐나다의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계획

(단위 : %)

연도	일반 연방법인세율
2000	28
2001	27
2002	25
2003	23
2004	21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독일의 경우 1998년까지 45%의 높은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은 1999년부터 새로운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인세율을 40%로 낮추었으며, 2001년부터는 기존의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한 25%의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Flood Victims Solidar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방정부 법인세율을 25%에서 26.5%로 1.5%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5.5%의 공동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2002년도의 연방정부 법인세율은 26.38%였으나 2003년도에는 27.96%로 상승하였다.

한편 독일의 이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특별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인데, 2000년 이후 이와 같은 세율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세율에 대한 부가세나 지방정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33.33%(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4.33%)의 단일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1년도에 3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2년도에는 36%로 인하하고 다시 2003년도부터는 3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1984년에 무려 42%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인 인하조치에 따라 1988년에 37.5%로 낮아졌으며, 1989년에는 다시 34.5%로 낮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도 34.5%(경감세율 25%)의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1998년 4월에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항구적 감세조치로 법인세율을 30%(경감세율 22%)로 인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Ⅳ-5> 일본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

연도	1984 ~	1987 ~	1988 ~	1989 ~	1999~
법인세율	42	40	37.5	34.5	30

자료 : 일본 재무성(http://mof.go.jp)

[그림 Ⅳ-3] G-7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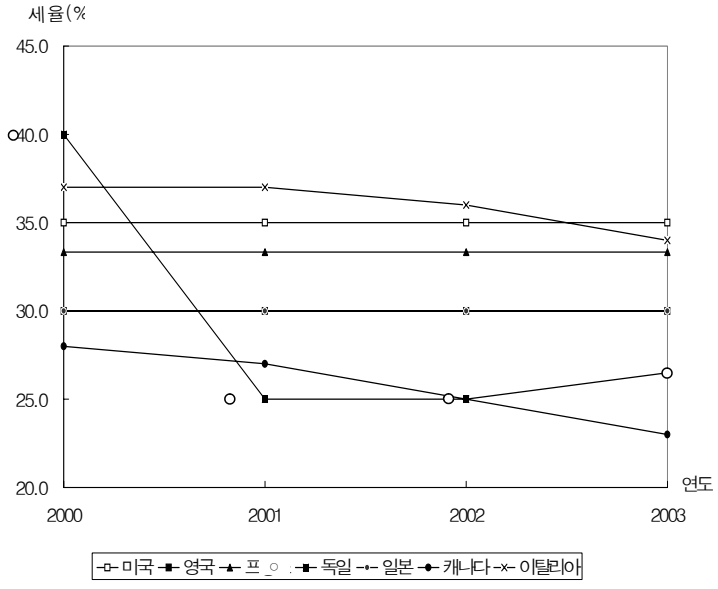

나. 기타 OECD 국가

아일랜드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1999년 재정법(Finance Act 1999)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표준 법인세율을 2001년부터 20%로 경감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이를 다시 16%로 경감하고 2003년 현재 12.5%의 대폭 경감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아일랜드는 제조업을 통해서 획득된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벨기에도 2003년 이후부터 급격한 법인세율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벨기에는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까지 법인세의 기준세율을 39%로 설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법인세율을 대폭적으로 경감하여 기준세율을 33%로 설정하는 한편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34.5%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인세율에는 3%의 부가세(austerity surcharge)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2003년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최종 세율은 각각 24.98%, 31.93%, 35.54%로 다소 높아진다.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는 폴란드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눈에 띤다. 폴란드는 1999년 34%였던 법인세율을 2004년에 22%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의 법인세율은 24%로 1999년에 비하면 무려 10%포인트나 낮아졌다. 더욱이 폴란드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기타 부가세 및 지방정부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법인세율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표 Ⅳ-6> 벨기에의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변화

(단위 : BEF 또는 EUR, %)

2000		2001	
과세소득(BEF)	세율	과세소득(BEF)	세율
~ 1,000,000	28	~ 1,000,000	28
1,000,001 ~ 3,600,000	36	1,000,001 ~ 3,600,000	36
3,600,001 ~ 13,000,000	41	3,600,001 ~ 13,000,000	41
2002		2003	
과세소득(EUR)	세율	과세소득(EUR)	세율
~ 25,000	28	~ 25,000	24.25
25,000 ~ 89,500	36	25,000 ~ 90,000	31
89,500 ~ 323,750	41	90,000 ~ 322,500	34.5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그림 Ⅳ-4] 기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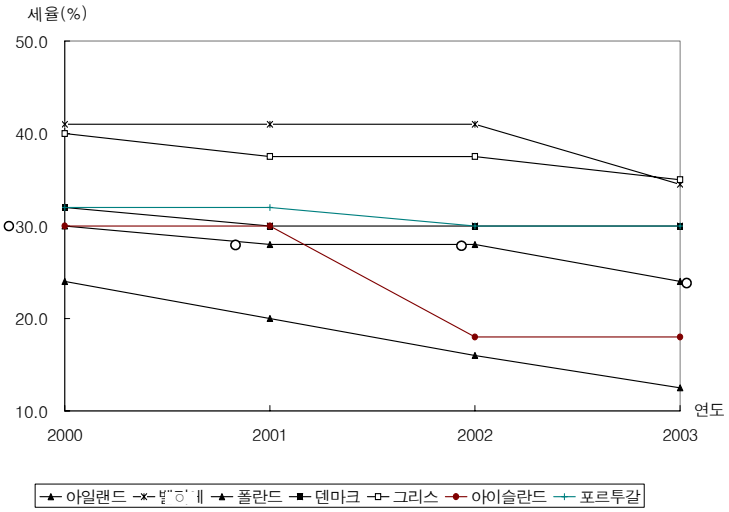

그 외에도 유럽 국가들 중에는 2000년대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덴마크는 2000년까지 32%의 단일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 30%로 2%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

스의 경우도 2000년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1~2002년에 37.5%, 2003년에는 35%를 적용하였다. 아이슬란드 역시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2001년에 3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2년부터 18%로 크게 낮추었다. 포르투갈 또한 2001년까지 3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30%(10%의 지방정부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두드러진다. 싱가포르는 1986년까지 40%라는 매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하여 왔다. 1987년에 법인세율을 33%로 낮춘 이후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1993년에는 법인세율을 30%로, 1997년에는 26%로 인하하였다. 그 이후 몇 년간 26%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싱가포르는 다시 2001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법인세율은 22%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까지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표 Ⅳ-7>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1990	1991	1993	1994	1997	2001	2002	2003
법인세율	32	31	30	27	26	25.5	24.5	22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http://iras.gov.sg)

그러나 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각각 25% 및 28%의 법

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30%(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3%)의 법인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97/98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0.5%포인트 낮추어 2002/03회계연도까지 16%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3/04회계연도부터는 최근의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반대로 법인세율을 17.5%로 1.5% 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를 비교하면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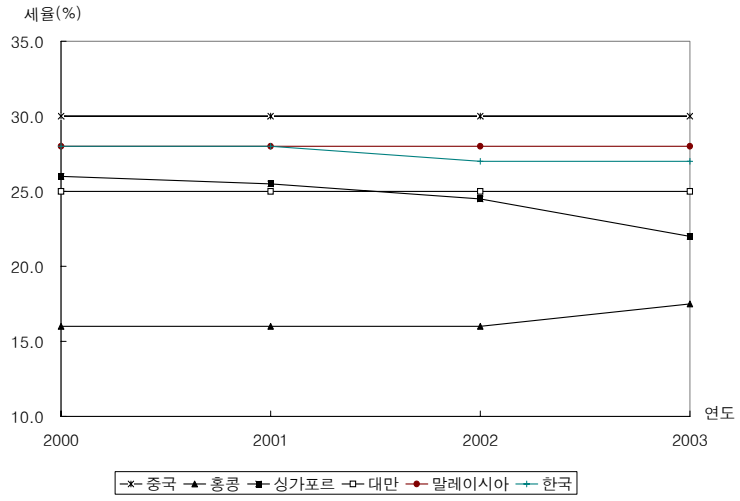

3. 시사점

G-7 국가 등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부담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대체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본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보다 많은 자본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즉, 한편으로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에 비해서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국의 법인세율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가운데서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법인세율 30%를 하한으로 지속적인 세율인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이미 30% 수준에 근접한 영국(30%)과 프랑스(34.3%)는 최근에는 세율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명목세율이 40%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으로 높았던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 명목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 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명목 법인세율이 33%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업종에 따라 1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선도기업(pioneer enterprise)에 대해 과감한 조세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성격의 역외거래지역(라부앙)을 설정하여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분된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쟁국에 비해 세부담을 낮게 설정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명목세율 인하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유효세부담을 변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효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가의 정책은 명목세부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만약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다른 국가들 사이에 명목세율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국들간에 조세지원제도가 유사하다면 명목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둘째,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경제환경이 유사한 국가들간의 경쟁이다.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대별되는 경제환경의 격차를 압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선진국끼리 경쟁을 통해 조세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끼리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목세율이 29.7%(지방세 포함)로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주변의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당히 높다. 명목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 세부담을 비교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명목세율도 국가의 기업정책에 대한 신호(signal)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세부담 격차를 대변할 수 있으므로 국제자본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국가군의 정책동향을 참조하여 우리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자본 유치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되는 나라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유효 법인세율을 비교하였다.

V. 주변 경쟁국과의 유효 법인세부담 비교[25]

다음에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대상이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유효 법인세부담을 비교하였다.

법정 법인세율로 대변되는 명목 법인세부담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유효 법인세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상적 투자를 가정하고 그 투자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에다 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가지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세부담을 계산하는 방법.

둘째,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세전 이익으로 나누어 평균세율을 계산하는 방법.

세부담 지표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조세제도의 변화가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는 첫 번째 방법이 우월하다.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얻은 세부담 지표는 기업의 수익률, 자금시장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조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따로 구분해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실제 세부담의 변화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세부담 지표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

25) 본장의 유효세부담 분석은 안종석・최준욱(2003)의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부담 분석' 중 원천지세부담 부분을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용한다.

투자이론에서 투자를 1단위 증가시킬 때 늘어나는 세부담 즉, 한계 유효세부담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한계 유효세부담은 첫 번째 방식을 통해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방식에 의한 평균 세부담이 실증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 유효세율은 지나치게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한편 실제 납세액을 근거로 계산한 평균 세부담은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실제 세부담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한계세후수익을 계산하여 한계수익과 기회비용이 일치하도록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기업이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여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고 그것을 투자결정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세전 이익으로 나눈 평균 세부담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 두 번째 방식이 더 우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제Ⅵ장 실증분석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구한 한계 유효세부담과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 세부담, 그리고 법정 법인세율로 대표되는 명목세부담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법인세 제도의 국가간 비교와 명목 법인세율의 변화가 한계적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본장에서는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여 유효세부담을 측정한다.

가상적 투자를 가정하고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법정세율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세부담은 한계 유효세부담과 평균 유효세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계 유효세부담은 투자로부터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률과 투자의 기회비용이 일치된 균형상태에서 투자를 1단위 증가시켰을 때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평균 유효세부담은 균형조건이 만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내는 가상적 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분석한 것이다.

한계 유효세율은 투자가 1단위 증가함에 따른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첫째 자본시장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균형상태에서 투자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증가되는 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태 또는 균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계유효세율은 실질적인 세부담 지표가 되지 못한다. 또한 한계 유효세율은 자본시장의 균형을 유도하는 다른 조건들[26]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한 조세정책의 효과만을 추출해 내기 어렵다.

둘째,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정과 단순화가 필요하다. 복잡한 감가상각제도도 단순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수많은 조세지원제도 중 소수의 대표적인 것만 고려하므로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따라서 실제 기업들이 그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한편 평균 유효세부담은 균형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투자사업을 가정하여 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위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복잡한 현

26)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

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두 번째 문제는 평균 유효세율의 경우에도 발생되며, 또한 이익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1. 한계 유효세율 분석

가. 개념

경제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후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자본조달비용보다 클 때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투자비용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면 투자가 줄어들고 세부담이 감소하면 투자가 늘어난다. 이때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투자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계 유효세율인 것이다.

[그림 Ⅴ-1]은 한계 유효세율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림에서 F'은 기업이 투자를 1단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생산물의 증가분을 나타내며, δ는 경제적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r^*는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며, S^K는 자본(K)의 공급곡선을 표시한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E_0에서 균형이 달성되며, 이때 K_0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의 존재는 투자를 감소시키며 균형점을 E_0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의 균형점을 E_T라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투자량은 K_T가 되며, 이와 같은 균형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세전 수익률(R_g)과 투자자가 가져가는 세후 수익률(R_n)의 차이가 세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계 유효세율(ETRG)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TRG = \frac{R_g - R_n}{R_g} \qquad (\text{V}-1)$$

$R_g = F' - \delta$: 투자로부터 발생한 세전 수익률

R_n :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후 수익률

[그림 Ⅴ-1] 한계 유효세율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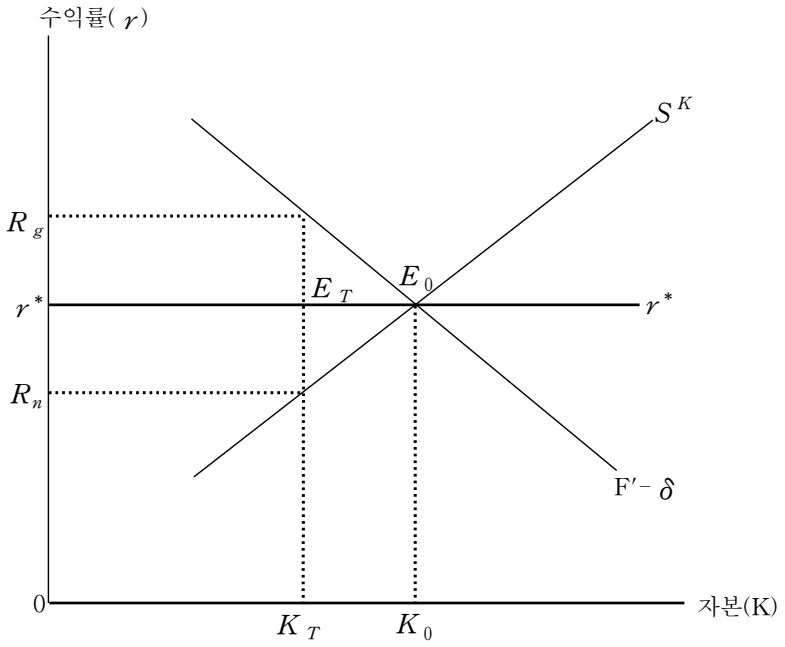

한편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투자로부터 발생한 (원천지) 세후 수익이 실질 이자율보다 크면 다른 지역의 자본이 유입되어 투자가 증가하므로 균형상태에서는 투자로부터 발생한 세후 수

익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r^*)과 같게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하여 한계 유효세부담을 원천지세부담(ETRS)과 거주지세부담(ETRR)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TRS = \frac{R_g - r^*}{R_g} \qquad (Ⅴ-2)$$

$$ETRR = \frac{r^* - R_n}{r^*} \qquad (Ⅴ-3)$$

여기서 ETRS는 원천지세부담이 되며, ETRR은 거주지세부담이 된다. 국내 거주자에 의한 투자의 경우 ETRS는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으로, ETRR은 투자자단계에서의 세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자자단계에서의 세부담을 무시하고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ETRS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세후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세후 수익률(R_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_n = \frac{1 + \rho^*(1-\sigma)}{1+\pi^*} - 1 \qquad (Ⅴ-4)$$

$\rho^* = (1+r^*)(1+\pi^*) - 1$: 투자의 기회비용

$(1+r^*) = (1+i)/(1+\pi)$

i: 명목 이자율, π : 원천지 물가상승률, π^* : 거주지 물가상승률

$\sigma = \frac{u^* - u^c}{1-u}$

σ : 투자자가 거주지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의 세율

u^c : 거주지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적용되는 원천지 세율 (국

내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되는 법인세율)

u^* : 거주지 명목세율 (국내투자의 경우 투자자단계의 세율)

u : 원천지 세율 (국내투자의 경우 기업단계의 세율)

▣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R_g)은 투자가 1단위 증가될 때 이에 따른 생산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 생산성(F')에서 투자된 자산의 자연적 가치 감소율 즉, 경제적 감가상각률(δ)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_g = F' - \delta$$

모든 투자는 신주 인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모두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t시점에서의 배당액(D_t)과 세부담(T_t)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_t = (1+\pi)^t F[K_t] - (1+\pi)^t I_t - T_t \qquad (\text{V}-5)$$

$$T_t = u_t \{ (1+\pi)^t F[K_t] - \alpha \widehat{K}_t - \phi_t (1+\pi)^t I_t \} \qquad (\text{V}-6)$$

π : 원천지 물가상승률

I_t : t 시점의 투자

u_t : t 시점의 명목 법인세율

α : 법정 감가상각률

K_t : t 시점 초기의 자본량

$F[K_t]$: 생산함수

$\phi_t = \phi^*/u_t$, ϕ_t : 투자소득공제율

ϕ^* : 투자세액공제율

$\widehat{K_t}$: 세법상 감가상각 목적의 잔존 자본량

$$\widehat{K_t} = \sum_{s=o}^{t} (1+\pi)^{t-s} I_{t-s}(1-\alpha)^{s} \quad (Ⅴ-7)$$

$$\widehat{K_t} - \widehat{K_{t-1}} = (1+\pi)^{t} I_t - \alpha \widehat{K_{t-1}} \quad (Ⅴ-8)$$

$$I_t = K_{t+1} - K_t + \delta K_t \quad (Ⅴ-9)$$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극대화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다.

$$F_t' = \frac{(r^* + \delta)}{(1-u_t)}\left(1 - \phi_t u_t - \frac{\lambda_t}{1-\sigma_t}\right) \quad (Ⅴ-10)$$
$$+ \frac{(1+r^*)}{(1-u_t)}\left\{\frac{(1-\sigma_{t-1})}{(1-\sigma_t)}\left(1-\phi_{t-1}u_{t-1} - \frac{\lambda_{t-1}}{1-\sigma_{t-1}}\right)\right.$$
$$\left. - \left(1 - \phi_t u_t - \frac{\lambda_t}{1-\sigma_t}\right)\right\}$$

여기서 λ_t는 라그랑제 승수(Lagrange Multiplies)로서 법정 감가상각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ambda_t = (1-\sigma_t)\alpha u_t + \lambda_{t+1}\frac{(1-\alpha)}{(1+i)} \quad (Ⅴ-11)$$

세금의 일시적 감면 즉, 조세휴일의 적용 없이 $u_t = u$, $\phi_t = \phi$로 일정한 경우 F'과 λ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King & Fullerton(1984)이 제시한 세전 수익률과 같은 것이다.

$$F_t' = \frac{(r^* + \delta)}{(1-u)}\left(1 - \phi u - \frac{\lambda}{1-\sigma}\right) \quad (Ⅴ-12)$$

$$\lambda = \frac{(1+i)(1-\sigma)\alpha u}{i+\alpha} \quad (Ⅴ-13)$$

위의 식 (Ⅴ-12)는 1단위의 추가적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수익($F'(1-u)$)이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아지도록 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의 기회비용은 실질 이자율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합($r^*+\delta$)에 실제 투자비용을 곱한 것과 같다. 실제 투자비용은 투자비(1)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두 가지 혜택 즉, 투자공제(ϕu)와 감가상각 ($\lambda/(1-\sigma)$)을 차감한 것이다. 만약 정부로부터 받았거나 받게 될 혜택의 가치가 상당히 크면 R_g가 r^*보다 작게 되어 원천지(또는 기업)단계의 세부담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명목세율이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한계세율이 0보다 작게 될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phi u+\lambda/(1-\sigma)$$

즉, 명목세율이 투자공제와 감가상각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원제도의 잠재적 가치보다 작으면 한계 유효세율은 0보다 작게 된다. 명목세율이 인하되면 투자공제, 감가상각공제 등 조세지원제도의 혜택도 줄어들게 되는데, 후자의 크기가 더 클 경우 명목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투자공제와 감가상각의 확대는 예외없이 한계 유효세율을 인하시킨다.

▣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ETRS)

투자자단계에서의 세부담을 무시하면 기업단계에서의 한계유효세율(ETRS)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TRS=\frac{R_g-r^*}{R_g}$$

한계 유효세율은 세전 수익률(R_g)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세후 수익률(r^*)을 뺀 나머지를 세부담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세전 수익

률로 나눈 것이다. 이는 세전 수익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세후 수익과 세금의 합계보다 많은 한 기업이 투자를 계속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R_g = F' - \delta$이며 F'은 앞의 식 (Ⅴ-10)과 (Ⅴ-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감가상각 혜택의 현재가치가 경제적 감가상각의 세전가치보다 낮은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아지며, 그 반대의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u_t = u$인 경우에는 $\sigma = 0$이 되므로 ($R_g - r^*$)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_g - r^* = \frac{(r^* + \delta)}{(1-u)}(u - \phi u - \lambda)$$

이때 총 조세지원 혜택을 A라고 하면 $A = \phi u + \lambda$가 된다.

나. 분석대상 국가의 관련제도 현황

다음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한계 유효세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세 제도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기타 관련 지표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다.

▣ 한국

한국의 법인세제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그 밖에 한계 유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표 Ⅴ-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에서 특별우대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7년간은 법인세 전액을,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우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감가상각제도는 법정 상각률을 기본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상각속도를 25% 가감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느린 상각(저속)과 가장 빠른 상각(고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8~12년이며, 건물의 내용연수는 15~25년이다.

<표 Ⅴ-1> 한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특별우대		우 대		일반기업
법인세율(u_t)	t≤7 7<t≤10 10>t	0 0.1485 0.297	t≤3 3<t≤5 5>t	0 0.1485 0.297	0.297
법정 상각률(α)	기계설비		0.221(저속)	0.313(고속)	
	건물		0.133(저속)	0.182(고속)	
경제적 상각률	기계설비		0.162		
	건 물		0.0339		
자산의 구성	기계설비		0.389		
	건 물		0.335		
	비상각자산		0.276		
투자세액공제율(ϕ^*)	t≤10 10>t	0 0.03	t≤5 5>t	0 0.03	0.03
대출이자율(i)	0.0666				
소비자물가상승률(π)	0.0406				

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2.
통계청, kosis.nso.go.kr

경제적 상각률은 윤건영・김종웅(1997)이 사용한 수치(기계설비 16.2%, 건물 3.39%)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수치는 Jorgenson and Yun(1991)이 측정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자산의 구성은 『기업경영분석』에 수록된 2001년도 제조업 자료로

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유형자산을 대표적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에 따라 기계설비와 건물 그리고 비상각자산(토지 등)으로 나누어 구성비를 계산한 것이다. 이 구성비를 이용하여 한계 유효세율을 가중평균함으로써 전체적인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데 분석의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한계 유효세율 분석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구성비를 적용하여 자산별 한계 유효세율을 종합하였다.

투자세액공제율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조특법 제24조)에 대한 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공제제도가 없으므로 3% 세액공제율의 일괄적인 적용은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과장하여 나타낼 수 있다[27]. 따라서 본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중에는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자율은 투자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공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공채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물가상승률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자료는 IMF 자료를 이용하였다.

▣ 중국

중국의 법인세율은 국세 30%, 지방세 3%로 총 33%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특구에 대해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특별우대). 지방세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체

27)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나 적용시한이 법률로 정해진 한시적인 제도이다.

로 국세와 같은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보아 본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경제특구가 있는 지역의 구시가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6.4%의 세율을 적용하였다(우대).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바, 이를 <표 Ⅴ-2>에 제시된 일반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Ⅴ-2> 중국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특별우대	우 대	일반기업	
법인세율(u_t)	0.165	0.264	t≤2 2<t≤5 5>t	0 0.165 0.33
법정 상각률(α)	기계설비 0.36 건물 0.09			
투자공제율(ϕ)	신규자본유입 0 이익금재투자 0.4			
대출이자율(i)	0.0585			
소비자물가상승률(π)	0.0046			

자료 : KOTRA, 『최신 중국조세제도 해설집』, 2003.
산동회계법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중심 중국의 회계와 조세제도』, 1997.
통계청, kosis.nso.go.kr

또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건물은 20년, 기계설비는 5년에 걸쳐 상각하며, 잔존가치는 10%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계 유효세율 산식에서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정액법 상각률을 정률법 상각률로 변환하였다. 정액법 상각률을 정률법 상각률로 전환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정액법 상각률의 두 배를 정률법 상각률로 간주하므로 <표 Ⅴ-2>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정률법 상각률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분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40%를 환급하고 있다. 이는 재투자액의 4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 홍콩

홍콩의 법인세율은 16%이며,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세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가상각제도에서 건물의 경우 20%, 기계설비의 경우 60%의 기초 상각을 허용하는데 이는 투자공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연차상각률은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4%(정률법 8%), 기계설비의 경우 정률법으로 미상각자산의 10, 20, 3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상각률을 적용하였다.

<표 Ⅴ-3> 홍콩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일 반 기 업
법인세율(u_t)	0.16
법정 상각률(α)	기계설비 0.12 건 물 0.08
투자공제율(ϕ)	기계설비 0.6 건 물 0.2
대출이자율(i)	0.0512
소비자물가상승률(π)	-0.0161

자료 :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중국(홍콩) 투자실무지침-투자에서 회수까지』, 삼정 KPMG, 2002.
통계청, kosis.nso.go.kr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며, 그후에도 협상을 통해 5년간 추가 면제가 가능하다(우대). 그러므로 <표 Ⅴ-4>에서 우대를 받는 기업은 10

년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면제기간이 끝난 후 사후 선도기업(post-pioneer company)으로 인정받으면 10년간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감가상각은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상각과 연차상각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상각률을 투자공제로 간주하였으며, 연차상각률은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률법으로 전환하였다.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초상각과 연차상각 대신에 신규구입 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3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률법 상각률(0.66)을 적용할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도 계산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 활동, R&D 활동, 건설공사, 식수 소비 절감 등과 같은 인가된 프로젝트에 신규투자시 5년에 걸쳐 투자액의 5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그 외에도 금융부문, 지역사업본부(Operational Head Quarter)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 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Ⅴ-4> 싱가포르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우 대		일반기업
법인세율(u_t)	t≤10	0	0.22
	10<t≤20	0.1	
	20>t	0.22	
법정 상각률(α)	기계설비	0.266(저속) 0.66(고속)	
	건물	0.06	
투자공제율(ϕ)	기계설비	0.2(저속상각의 경우)	
	건물	0.25	
		-	자동화설비 0.5
대출이자율(i)	0.056608		
소비자물가상승률(π)	0.0099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투자가이드』, 1998.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2003.
통계청, kosis.nso.go.kr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현재 법인세율이 28%인데 선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생산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은 기초상각과 연차상각으로 구분되는데 기초상각률은 건물 10%, 기계설비 20%이다. 연차상각은 정액법에 의해 건물의 경우 2%, 기계설비의 경우 8~20%의 상각률이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률법 상각률로 전환하여 각각 4%, 16~40%를 적용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선도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수출촉진, 국내 부가가치 증대, 국내 원재료 사용, 고용증대, 산업진흥지역에의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의 투자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제율은 5~30%이고, 사업승인 후 5년간의 투자에 대해 공제가 허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인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투자공제율 25%를 적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업본부 등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Ⅴ-5>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제 및 관련 지표

		우 대	일반기업
법인세율(u_t)		t≤5 0 5>t 0.28	0.28
법정 상각률(α)		기계설비 0.16(저속) 0.4(고속) 건물 0.04	
투자공제율(ϕ)	기초상각	기계설비 0.2 건물 0.1	
	고용증대지원	-	t≤5 0.25
대출이자율(i) 소비자물가상승률(π)		0.06567 0.01417	

자료 :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www.mida.gov.my/guide-04.html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 안내-말레이시아」, 1997.
CCH, *Malaysian Master Tax Guide*, 2003.
통계청, kosis.nso.go.kr

다. 한계 유효세부담 비교

▣ 한국

분석 결과 나타난 한국의 법인세부담을 정리하면 <표 Ⅴ-6>과 같다.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초기의 한계유효세율은 7.3%(고속상각)~7.9%(저속상각)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5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초년도의 한계 유효세율이 18.3%(저속상각)~22.7%(고속상각)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기업은 고속상각이 더 유리하여 투자공제가 없는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24.9%(고속상각)~30.6%(저속상각)이며,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3% 투자세액공제를 가정하면 16.5%(고속상각)~24.3%(저속상각)가 된다.

<표 Ⅴ-6> 한국의 한계 유효법인세율 - 투자자 거주지에서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

	저속상각	고속상각
고도기술수반사업		
1년차	0.079	0.073
7년차	0.244	0.329
10년차	0.311	0.374
12년차	0.306	0.249
경제자유구역		
1년차	0.183	0.227
3년차	0.258	0.347
5년차	0.311	0.374
7년차	0.306	0.249
일반기업		
투자공제 없음	0.306	0.249
기계설비 투자 3% 세액공제	0.243	0.165

▣ 중국

<표 Ⅴ-7>에서는 중국의 법인세부담을 정리하였다.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의미하는 특별우대의 경우 명목세율은 16.5%인 데 비해 감가상각을 고려한 한계 유효세율은 10.6%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특구가 속한 지역의 구시가지 등 24%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17.5%이다.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처음 5년간은 조세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때 감면 초기의 한계 유효세율은 12%이고 감면기간이 지나면 22.5%가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투자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면 그 투자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0보다 작아지게 된다. 조세환급 혜택은 명목세율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명목세율이 높을수록 재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은 낮다.

<표 Ⅴ-7> 중국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

		신규자본 유입	투자이익 재투자
특별우대		0.106	-0.047
우 대		0.175	-0.184
일반기업	감면초기	0.120	-
	감면종료후	0.225	-0.455

▣ 홍콩

홍콩은 명목세율이 16%로 낮은 대신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계 유효세율은 -5.9%로 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계설비 60%, 건물 20%에 달하는 관대한 기초상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선도산업(pioneer industry)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데 그후 협상에 의해 감면기간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으며,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사후 선도기업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10년간 10%의 명목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혜택과 관대한 감가상각제도로 인하여 선도기업의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은 0.4~7.6% 사이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표 Ⅴ-8> 싱가포르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

기계장비 상각방법	고속상각	기초상각+연차상각
선도기업		
1년차	0.004	0.006
9년차	0.048	0.047
15년차	0.043	0.036
22년차	0.076	0.025
일반기업		
투자공제 없음	0.104	0.053
기계설비 투자 50% 투자공제	-0.498	-0.941

조세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기업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으로 고속상각보다 기초상각과 연차상각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때 한계 유효세율은 5.3%이다. 반면 고속상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0.4%가 된다. 일반기업이 노동력 절약을 위해 공업용 로봇 및 특정 자동화설비를 도입할 경우 5년에 걸쳐 투자액의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50% 투자공제를 가정할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0보다 작아진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선도기업은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받는데 감면 초기의 한계 유효세율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1.3%(저속상각)~

3.4%(고속상각) 수준이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후의 선도기업이나 일반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고속상각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기업이 고속상각을 하는 경우 한계 유효세율은 6.9%이며, 기초상각과 연차상각의 조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계 유효세율이 18.5%로 나타난다. 일반기업 중 말레이시아인을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5년간 25%의 투자공제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초기의 한계 유효세율은 0보다 작다.

<표 Ⅴ-9>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법인세율

	저속상각	고속상각
선도기업		
1년차	0.013	0.034
5년차	0.024	0.173
일반기업		
투자공제 없음	0.185	0.069
투자공제 25% 적용 초기	-0.037	-0.414

▣ 요약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은 7%대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특별우대를 받는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각각 0.4%, 1.3%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부(-)의 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국(10.6%)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크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기업 및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의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Ⅴ-10>은 앞서 제시한 국가들의 일반기업 한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

는 경우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은 24.9~30.6%인 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5.3~18.5%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를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세부담은 16.5~24.3%로 낮아지는데, 다른 국가들은 훨씬 더 관대한 투자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부(-)의 한계 유효세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는 투자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데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연차상각 외에 10~60%의 기초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대한 감가상각제도와 투자공제제도가 결합될 경우 한계 유효세율이 0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표 Ⅴ-10> 일반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비교

투자대상 지 역	한국	중국(특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자공제 미적용	0.249~0.306	0.106~0.175	-0.059	0.053~0.104	0.069~0.185
투자공제 적 용	0.165~0.243	-0.184~-0.047	-	-0.941~-0.498	-0.414~-0.047

라. 법인세율 인하가 한계 유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표 Ⅴ-11>에서는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한계 유효세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국세인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포인트씩 인하하면 지방세인 주민세 법인세할도 법인세율 인하분의 1/10만큼씩 줄어들게 되므로 총세율 인하폭은 2.2%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명목세율을 인하하면 국내에 투자한 일반기업이 납부하는 한계 유효세부담도 1.9~2.2%포인트씩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을 중국

(10.6~17.5%)이나 말레이시아(6.9~18.5%)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수준으로 낮추려면 법인세율을 20% 또는 그 이하로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한계 유효세부담을 원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명목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표 Ⅴ-11>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법인세율 인하가 조세휴일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계 유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다.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면 일반기업의 한계 유효세부담도 2%포인트 정도씩 줄어드는 데 비해 조세휴일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초기(조세지원 초기) 한계 유효세율은 0.4~0.6%포인트 정도씩 줄어든다. 그러므로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에 대해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7년간 법인세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표 Ⅴ-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투자기업의 한계 유효세부담 변화 - 고속상각

법정 세율		일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초기
국세	국세+지방세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없음	
0.27	0.297	0.165	0.249	0.073
0.25	0.275	0.143	0.230	0.069
0.23	0.253	0.122	0.211	0.064
0.21	0.231	0.100	0.192	0.059
0.19	0.209	0.079	0.173	0.054
0.17	0.187	0.059	0.154	0.048
0.15	0.165	0.038	0.135	0.043

지금까지 한계 유효세율을 분석함에 있어 투자자단계에서의 세금은 무시하고 기업단계에서의 원천지 세금만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이 근본적으로 기업단계에서의 원천지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투자자단계에서의 세액공제 등으로 완전히 상쇄되어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한계 유효세율을 구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다음 장에서는 기업단계에서의 세부담 변화가 투자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다.

2. 평균 유효세부담 분석

가. 개념

다음에서는 평균 유효세부담을 분석한다. 한계 유효세부담은 기업이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계적 조건들(marginal conditions)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1단위 늘리는 데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계산한 것이다. 즉,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를 하여 균형에 도달한 이후 거기서부터 투자를 1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OECD(2003)에서는 이러한 한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경제적 의미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가상적 투자사업의 세부담을 평균 유효세부담이라고 정의하고 평균 세전 수익률이 20%라는 가정하에 OECD 회원국의 평균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한 바 있다.

평균 유효세부담과 한계 유효세부담은 모두 가상적 투자사업에 대해 감가상각공제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세율 등 조세제도를 적용하여 미래의 세부담을 예측한 것으로서 이들 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부담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차이점을 보면 한계 유효세부담은 기업의 투자행태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가 조세제도 변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평균 유효세부담보다 우수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한계 유효세부담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환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한 조세제도 변화의 효과만을 추출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반면 평균 유효세부담은 이자율, 환율 등 기업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조세제도 변화가 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03)의 평균 유효세부담의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들의 평균 유효세부담을 계산하였다. 평균 유효세부담의 계산은 OECD(2003)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휴일제도의 효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가정 및 계산방법

평균 유효세부담의 계산을 위해 투자규모 및 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차연도 초기에 100만큼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업경영분석』에서 구한 자산구성비를 적용하여 38.9%가 기계설비에 투자되고 33.5%는 건물에, 나머지 27.6%는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가정한다. 감가상각공제전 이익의 규모가 1차연도와 2차연도에는 각각 -15, -10으로서 손실이 발

생하며, 3차연도부터 10, 20, 30, 35로 이익이 증가하고, 6차연도 이후에는 매년 35만큼씩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시나리오 Ⅰ). 이 경우 감가상각공제후 세전 수익률이 5차연도 18%, 6차연도 이후 23%로 OECD(2003)에서 가정한 평균 세전 수익률 20%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 외에 조세제도를 설명하는 지표들은 앞 절의 한계 유효세율 계산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결손금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5년간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유효세부담의 계산을 위해 먼저 이익금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 세액공제액,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도출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최종적인 세부담이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납부세액은 '0'이 된다. 구체적 계산사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다.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부담

<표 Ⅴ-12>는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평균 유효세부담을 각 제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두 번째 열에는 감가상각공제를 하기 전의 세전 이익을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열부터는 감가상각공제, 세액공제, 조세휴일제도를 적용하였을 때의 세부담을 정리하였다.

일반기업은 고속상각과 저속상각, 저속상각과 기계설비에 대한 10%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고속상각과 저속상각으로 구분하

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투자 초기부터 15년간 매년 발생하는 세부담을 정리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5, 10, 20년간 누계를, 마지막에는 누계를 누적이익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조세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속상각률을 적용하면 처음 6년간, 저속상각률을 적용하면 처음 5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이는 결손금 이월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7년간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최초 세금 납부시기가 10년차로 연기되며, 10년차부터 3년간은 일반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20년간의 평균세율은 고도기술수반사업 11.8%, 일반기업 17.2%로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상당히 낮다(고속상각의 경우).

한계 유효세 부담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평균유효세부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 및 세액공제 이월에 있어서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인데, 앞에서의 한계 유효세부담 분석에서는 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이월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결손금과 세액공제 이월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 설립 초기에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표 Ⅴ-12>의 예에서도 일반기업(고속상각)의 경우 투자 후 5년간 납부세액이 전혀 없으므로 투자 후 5년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존 기업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세감면기간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7년간 법인세 전액이 감면되나 이러한 조세감면이 없더라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수년간은 이월된 결손금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실제 감면기간은 그보다 짧게 나타나게 된다.

<표 Ⅴ-12>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부담-시나리오 Ⅰ

연 도	이익금[1]	일반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경제자유구역	
		고속상각	저속상각	저속상각, 투자공제[2]	고속상각	저속상각	고속상각	저속상각
1차연도	-15	0	0	0	0	0	0	0
2	-10	0	0	0	0	0	0	0
3	10	0	0	0	0	0	0	0
4	20	0	0	0	0	0	0	0
5	30	0	0	0	0	0	0	0
6	35	0	2.4	0	0	0	0	1.2
7	35	6.6	7.5	7.5	0	0	3.3	3.8
8	35	6.7	7.5	7.5	0	0	3.3	7.5
9	35	6.7	7.5	7.5	0	0	6.7	7.5
10	35	6.7	7.6	7.6	3.4	3.8	6.7	7.6
11	35	6.8	7.6	7.6	3.4	3.8	6.8	7.6
12	35	6.8	7.6	7.6	3.4	3.8	6.8	7.6
13	35	6.9	7.6	7.6	6.9	7.6	6.9	7.6
14	35	6.9	7.6	7.6	6.9	7.6	6.9	7.6
15	35	6.9	7.6	7.6	6.9	7.6	6.9	7.6
누 계								
5년	35	0	0	0	0	0	0	0
10년	210	26.7	32.5	30.1	3.4	3.8	26.7	30.1
20년	560	96.3	109.9	106.7	66.1	72.8	96.3	106.7
평균세율[3]								
5년		0.0	0.0	0.0	0.0	0.0	0.0	0.0
10년		12.7	15.5	14.3	1.6	1.8	12.7	14.3
20년		17.2	19.5	19.1	11.8	13.0	17.2	19.1

주: 1) 감가상각공제전 이익금
2) 기계설비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3) (누적 세부담)/(이익금 누계), 단위: %

<표 Ⅴ-12>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7년간의 법인세 전액 감면이 실질적으로는 3년간 감면효과가 있을 뿐이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3년간의 전액 감면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 조세감면의 개시일을 최초로 세부담이 발생한 시점으로 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평균 유효세부담은 이익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표 Ⅴ-12>에서는 기업 설립 후 2년간 손실이 발생하고 그 후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설립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한 기업도 상당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Ⅴ-13>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감가상각공제 전 이익률이 35%라는 가정하에 평균 유효세부담을 계산하였다(시나리오 Ⅱ).

기업의 설립 초기 이익률이 변함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설립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휴일제도의 감면효과는 그대로 평균 유효세부담의 변화로 나타나며, 일반기업의 설립 후 5년간 평균 유효세율은 고속상각의 경우 17.7%, 저속상각의 경우 20.8%인 데 비해 고도기술수반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부담은 0%,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세부담은 3.7%(고속상각)~4.2%(저속상각)이다. 한편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10%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설립 첫 해의 세율을 5%(고속상각)에서 1.1%로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는 데 그쳤다.

<표 Ⅴ-13>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부담-시나리오 II

연 도	이익금[1]	일반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경제자유구역	
		고속상각	저속상각	저속상각, 투자공제[2]	고속상각	저속상각	고속상각	저속상각
1차연도	35	5.0	6.7	1.1	0	0	0	0
2	35	6.4	7.4	6.4	0	0	0	0
3	35	6.5	7.4	6.4	0	0	0	0
4	35	6.5	7.4	6.5	0	0	3.3	3.7
5	35	6.5	7.5	6.5	0	0	3.3	3.7
6	35	6.6	7.5	6.6	0	0	6.6	7.5
7	35	6.6	7.5	6.6	0	0	6.6	7.5
8	35	6.7	7.5	6.7	3.3	3.8	6.7	7.5
9	35	6.7	7.5	6.7	3.4	3.8	6.7	7.5
10	35	6.7	7.6	6.7	3.4	3.8	6.7	7.6
11	35	6.8	7.6	6.8	6.8	7.6	6.8	7.6
12	35	6.8	7.6	6.8	6.8	7.6	6.8	7.6
13	35	6.9	7.6	6.9	6.9	7.6	6.9	7.6
14	35	6.9	7.6	6.9	6.9	7.6	6.9	7.6
15	35	6.9	7.6	6.9	6.9	7.6	6.9	7.6
누 계								
5년	175	30.9	36.4	27.0	0	0	6.5	7.4
10년	350	64.2	74.0	60.3	10.1	11.3	39.8	45.0
20년	700	133.8	150.6	129.9	79.6	87.9	109.4	121.6
평균세율[3]								
5년		17.7	20.8	15.4	0.0	0.0	3.7	4.2
10년		18.6	21.1	17.2	2.9	3.2	11.4	12.9
20년		19.1	21.5	18.6	11.4	12.6	15.6	17.4

주: 1) 감가상각공제전 이익금
2) 기계설비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3) (누적 세부담)/(이익금 누계), 단위: %

라. 주변 경쟁국과의 평균 유효세부담 비교

<표 Ⅴ-14>와 <표 Ⅴ-15>에서는 특별한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기업과 가장 우대를 받는 특별우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Ⅰ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부담을 주변의 경쟁국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일반기업은 투자 후 7년차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 데 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

우에는 1년 먼저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20년간 평균 세부담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3.3%, 16.2%로 우리나라, 중국, 말레이시아(17.2%~20.6%)에 비해 낮다. 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명목세율이 각각 16%와 22%로 우리나라, 중국, 말레이시아(28~33%)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세부담은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높으나 중국, 말레이시아의 일반기업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표 Ⅴ-14>에 수치로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대부분이 일반기업에 속하는 반면, 중국에는 여러 가지 우대제도가 많으므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경우 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경우에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사례가 오히려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우대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20년간 평균 세부담이 5.5%로 가장 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도기업의 지위연장 및 사후 선도기업의 지위부여에 따른 지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20년 평균 세부담이 10.2%이다.

<표 Ⅴ-14> 일반기업의 평균 세부담-시나리오 Ⅰ

연도	이익금[1]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3]
1차연도	-15	0	0	0	0	0
2	-10	0	0	0	0	0
3	10	0	0	0	0	0
4	20	0	0	0	0	0
5	30	0	0	0	0	0
6	35	0	0	2.7	1.7	0
7	35	6.6	4.0	5.1	6.3	8.0
8	35	6.7	4.0	5.1	6.3	8.0
9	35	6.7	8.0	5.1	6.3	8.1
10	35	6.7	8.1	5.1	6.3	8.1
11	35	6.8	8.1	5.1	6.3	8.1
12	35	6.8	8.1	5.1	6.3	8.2
13	35	6.9	8.2	5.1	6.4	8.2
14	35	6.9	8.2	5.1	6.4	8.3
15	35	6.9	8.3	5.1	6.4	8.3
누 계						
5년	35	0	0	0	0	0
10년	210	26.7	24.1	23.1	26.9	32.2
20년	560	96.3	107.0	74.3	90.8	115.6
평균세율[2]						
5년		0.0	0.0	0.0	0.0	0.0
10년		12.7	11.4	11.0	12.8	15.3
20년		17.2	19.1	13.3	16.2	20.6

주: 1) 감가상각공제전 이익금
2) (누적 세부담)/(이익금 누계), 단위: %
3) 투자소득공제율 25%

<표 Ⅴ-15> 특별우대기업의 평균 세부담-시나리오 Ⅰ

연도	이익금[1]	한국 고도기술	중국 특구	홍콩 일반기업	싱가포르 선도기업	말레이시아 선도기업
1차연도	-15	0	0	0	0	0
2	-10	0	0	0	0	0
3	10	0	0	0	0	0
4	20	0	0	0	0	0
5	30	0	0	0	0	0
6	35	0	0	2.7	0	7.9
7	35	0	4.0	5.1	0	8.0
8	35	0	4.0	5.1	0	8.0
9	35	0	4.0	5.1	0	8.1
10	35	3.4	4.0	5.1	0	8.1
11	35	3.4	4.0	5.1	2.9	8.1
12	35	3.4	4.1	5.1	2.9	8.2
13	35	6.9	4.1	5.1	3.0	8.2
14	35	6.9	4.1	5.1	3.0	8.3
15	35	6.9	4.1	5.1	3.1	8.3
누 계						
5년	35	0	0	0	0	0
10년	210	3.4	16.0	23.1	0.0	40.1
20년	560	66.1	57.0	74.3	30.8	123.5
평균세율[2]						
5년		0.0	0.0	0.0	0.0	0.0
10년		1.6	7.6	11.0	0.0	19.1
20년		11.8	10.2	13.3	5.5	22.1

주: 1) 감가상각공제전 이익금
2) (누적 세부담)/(이익금 누계), 단위: %

Ⅵ. 법인세부담이 기업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들은 매우 오래 전부터 법인세부담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28].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조세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제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자국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의 연구들은 그 믿음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 법인세율, 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 감가상각제도 등 법인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자본비용(cost of capital) 또는 세후 투자수익률을 변화시켜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그간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더라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간에 있어서의 효과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이론적 분석은 현실 경제에 나타나는 법인세제가 기업들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달경로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경로를 모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29], 실증분석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

---

28) Jorgenson(1963)은 종전의 투자이론인 가속도모형(the accelerator model)과는 달리 자본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고전파 투자이론(neoclassical theory of investment)을 고안해 냈다. 한편 Abel(1979) 및 Hayashi(1982)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을 도입하여 Tobin(1969)의 q모형을 도출해 냈다.

29)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및 불확실성(uncertainty)에 관한 연구

판하면서 새로운 기법 및 다양한 투자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효과를 재추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30]. 특히 후자의 접근방법에서는 투자와 자본비용간의 장기적 관계는 매우 유의하다는 연구성과가 있었으며, 법인세제 개편이 있었던 시기에 행해진 개별기업들의 투자결정을 분석해 보면 자본비용이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였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인세제 변화가 국민경제의 총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밝혀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는 물론 최근까지도 법인세제의 개편 및 소득기반 과세체계의 소비기반 과세체계로의 개편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을 논의할 때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제1절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후,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함께 법인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 및 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가 법인세부담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추정해 보았다.

1. 외국의 연구결과

본절에서는 우선 법인세제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를 간단한 동태적 이론모형인 신고전파 투자모형(dynamic neoclassical inve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이러한 투자모형을 이용한 외국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론모형과는 별도로 연립방정식 체계에 의한 거시계량모형 또

들에 대해서는 Dixit and Pindyck(1994)를 참조하라.

30) Caballero(1994),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4, 1996)를 참조하라.

는 단일방정식인 투자함수의 추정에 의한 계량분석 결과들도 정리하였다.

가.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의한 분석

Summers(1981), Judd(1985), Sinn(1987), Turnovsky(1995) 등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 경제주체(a representative infinitely-lived agent)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s)[31]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규투자에 대한 한계비용(the marginal cost of newly installed capital)은 다음과 같다.

$$P(1-ITC-t_c \cdot z)+(1-t_c)\psi_I(I,K)$$

여기서 P는 투자재의 산출물에 대한 상대가격을, ITC는 투자세액공제율을, t_c는 법인세율을, z는 1달러 투자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ψ_I는 투자에 따르는 한계추가비용으로서 자본스톡 조정비용 함수인 $\psi(I,K)$의 투자에 대한 편도함수를 의미하며, I는 투자,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감안한 신규투자의 한계비용이 한계수익인 q비율과 일치될 때까지 투자를 증대시킨다. 다음은 이를 포함한 기업의 극대화 조건식들이다.

$$F_L(K, L) = w$$

$$\frac{(1-t_p)}{(1-t_g)}[P(1-ITC-t_c \cdot z)+(1-t_c)\psi_I(I,K)]=q$$

$$\frac{(1-t_p)}{(1-t_g)}[\frac{(1-t_c)F_K(K,L)}{q}+\frac{\dot{q}}{q}+\frac{(qI-HK)}{qk}]=\frac{\beta}{(1-t_g)}$$

31) 여기서는 내국법인의 국내투자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F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w는 실질임금을, t_p는 배당소득세율을, t_g는 자본이득세율을, q는 q비율[32]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고전파 투자모형의 정상상태(the steady state)를 구하면[33] 다음과 같은데 이들 식을 이용하여 법인세제가 자본소득 등의 정상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면 <표 Ⅵ-1>과 같다.

$$q^* = (1-t_p)/(1-t_g)$$

$$U_L(C^*, L^*) + F_L(K^*, L^*)(1-t_p)U_C(C^*, L^*) = 0$$

$$(1-t_c)F_K(K^*, L^*) = \frac{\rho}{(1-t_g)}$$

$$F_K(K^*, L^*) = C^* + G$$

법인세율(t_c)을 인상하면 자본의 세전 한계생산이 증가하여 자본-노동 비율이 하락하고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한다. K^*, L^*, C^* 등이 배당소득세율(t_p)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정상상태에서는 $\rho = \beta = r(1-t_p)$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이득세율(t_g)을 인상하면 필요 자본수익률을 인상시켜 자본-노동 비율의 감소 및 소비와 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세액공제율(ITC) 또는 감가상각률(z)의 인상은 q비율을 하락시켜 자본-노동 비율 및 투자, 생산, 소비 등을 증가시킨다.

한편, 감가상각을 배제한 보다 단순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항구적 법인세제 변경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34]를 정

32) Hayashi(1982)에 따르면 선형 동조적 생산함수(linear homogeneity of the production function) 및 완전경쟁을 가정할 경우 q비율은 $q = \frac{V}{K} = \frac{S \cdot E}{K}$와 같이 기업가치와 연계된다. 여기서 V는 기업의 현재가치를, S는 주식의 산출물에 대한 상대가격을, E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한다.

33) *는 정상상태를 나타낸다. 이들 식의 유도에 대해서는 Turnovsky (1995)를 참조하라.

리해 보면 <표 Ⅵ-2>와 같다.

<표 Ⅵ-1>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정상상태의 비교분석)

	자본스톡 (K)	생산 및 소득 (Y)	소비 (C)	q비율	자본비용
법인세율(t_c) 인상시	−	−	−	0	+
배당소득세율(t_p) 인상시	−	−	−	−	0
자본이득세율(t_g) 인상시	−	−	−	+	+
투자세액공제율(ITC) 또는 감각상각률(z) 인상시	+	+	+	−	−

<표 Ⅵ-2> 법인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

	투자	q비율	자본비용
법인세율(t_c) 인상시	−	−	−
배당소득세율(t_p) 인상시	−	−	−
자본이득세율(t_g) 인상시	−	−	?
투자세액공제율(ITC) 인상시	+	+	−

나. 신고전파 투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그 동안 이러한 신고전파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특히 James(1994a, 1994b) 및 James and Matier(1995)는 캐나다 경제에 대한 신고전파 모형을 구축하여 조세부담 감축과 함께 경상이전지출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본관련세

34) Abel(1990)을 참조하라.

(capital income tax)의 감축이 노동관련세(labor income tax)나 소비관련세(sales tax)의 축소보다 경제성장률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자본관련세의 감축은 자본비용 하락 및 세후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는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공급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캐나다 재무성에서는 이러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개발하여 세제개편 및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정책모의실험(policy simulation)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재무성의 Xu(1997, 1999)는 세제를 자본관련세·노동관련세·소비관련세로, 재정지출을 경상이전(lump-sum transfers)·소비지출(final goods sector-specific spending)·인적자본관련지출(human capital sector-specific spending)·순수공공지출(pure public spending)로[36]세분하여 모형화함으로써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였다. Xu(1999)는 자본관련세 비중이 높은 캐나다, 노동관련세 비중이 높은 프랑스, 자본 및 노동관련세 비중이 모두 높은 스웨덴 등 세 나라에 대하여 ① 자본관련세 일부를 소비관련세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본관련세 일부를 노동관련세로 전환하는 경우 ③ 자본관련세 감축을 순수공공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④ 자본관련세 감축을 인적자본관련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⑤ 자본관련세 감축을 경상이전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⑥ 자본관련세 감축을 전반적인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

35) 자본관련세, 노동관련세, 소비관련세는 OECD의 구분방법에 의한 것으로 평균유효세율에 대한 공식은 Caley and Tchilinguirian(2000)을 참조하라.

36) 경상이전은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지출을, 소비지출은 산업개발, 자원보전을 위한 지출을, 인적자본관련지출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출을, 순수공공지출은 재산보호, 운송, 통신, 환경,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표 Ⅵ-3> 유형별 세율의 국가간 비교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자본관련세율	0.46	0.24	0.49
노동관련세율	0.29	0.45	0.48
소비관련세율	0.10	0.18	0.23

출처 : Xu(1999)

모든 경우에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본관련세(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의 총 자본관련세수의 12.3%, 14.7%, 14.4%에 해당함[37])를 감축시키며 줄어든 세수는 전부 여타 세목의 세수증대 또는 지출축소로 보전하여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본관련세 감축의 경제상승률 제고효과가 0.0076~0.063%포인트(장기균형 기준)로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38]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이다.

한편, 자본관련세부담 경감을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시키는 경우 세 나라 모두 경상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성장률 제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39], 자본관련세부담을 여타 세목으로 이전시

37) OECD, *Revenue Statistics* 2002의 통계를 이용하여 2000년도의 개인소득세(1100)중에서 자본관련세에 해당하는 5%, 법인소득세(1200), 부동산세 및 자본거래세(4000)의 합계를 자본관련세수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자본관련세수의 규모는 총 자본관련 세수의 14.1%이다. 이를 법인세로 환산해 보면 법인세수의 27.0%, 법인세율 기준으로는 현행 27%에서 20%로 7%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에 해당한다.

38) 경제규모가 동일한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와 5.05%로 0.05%포인트 정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20년 후에는 경제규모가 1.1배, 50년 후에는 1.3배로 큰 차이가 난다.

39) 스웨덴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시킨 4가지 경우 모두 성장률 제고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는 경우에는 소비관련세율이 낮은 캐나다나 프랑스는 소비관련세로 이전시키는 것이 성장률 제고효과가 크지만 소비관련세율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노동관련세로 이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 자본관련세 감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포인트)

	국가	10년 후	30년 후	장기균형
모의실험 ① 소비관련세 증대	캐나다	0.0344	0.0311	0.0302
	프랑스	0.0311	0.0265	0.0253
	스웨덴	0.0768	0.0519	0.0481
모의실험 ② 노동관련세 증대	캐나다	0.0065	0.0127	0.0116
	프랑스	0.0015	0.0091	0.0076
	스웨덴	0.0674	0.0665	0.0631
모의실험 ③ 순수공공지출 축소	캐나다	0.0139	0.0126	0.0113
	프랑스	0.0166	0.0196	0.0185
	스웨덴	0.0555	0.0558	0.0546
모의실험 ④ 인적자본관련지출 축소	캐나다	0.0148	0.0037	0.0031
	프랑스	0.0105	0.0143	0.0138
	스웨덴	0.0396	0.0539	0.0536
모의실험 ⑤ 경상이전지출 축소	캐나다	0.0360	0.0406	0.0395
	프랑스	0.0249	0.0331	0.0318
	스웨덴	0.0391	0.0436	0.0412
모의실험 ⑥ 전반적인 재정지출 축소	캐나다	0.0267	0.0267	0.0256
	프랑스	0.0208	0.0265	0.0253
	스웨덴	0.0443	0.0480	0.0466

출처 : Xu(1999)

그러나 이상과 같이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입각한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이러한 이론모형은 매우 복잡한 경제 현상을 크게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법인세제 개편시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로

를 통한 경제적 효과들을 모두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Merette(1996, 1997)에서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한 정책모의실험 결과 세수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감축하는 정책이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감세정책의 파급경로들 중에서 어느 경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의 크기는 물론 변화의 방향조차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이러한 모의실험에는 이들 모형에 포함된 각종 파라미터에 현실적인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표 Ⅵ-5>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의실험 결과는 이러한 파라미터 값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값들을 모두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표 Ⅵ-5> 모의실험 ⑥의 캐나다 장기균형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기본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킬 경우)

기본모형	=0.15→0	=0.25→0.15	=0.75→0.55	=0.55→0.75	=0.11→0.20	=0.67→0.50
0.0256	0.0258	0.0499		0.0255	0.0251	0.0204	0.0235

기본모형	1/=0.55→0.35	=0.012→0.02	k=0.07→0.10	h=0.055→0.07	=0.67→0.5	=0.67→0.5
0.0256	0.0181	0.0251	0.0227	0.0237	0.0360	0.0266

주 : (노동공급함수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계수), (생산함수에서 물적자본에 대한 계수), (인적자본 생산함수에서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계수), (정부지출 항목별 비중), (생산함수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계수), (효용함수에서 소비-여가의 비중), 1/(시점간 대체탄력성), (시간선호율), k(실물자본의 감가상각률), h(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생산함수에서 노동투입에 대한 계수), (생산함수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계수)

출처 : Xu(1999)

다. 거시계량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단순화한 이론모형에 의존하는 방법 대신 현실 경제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는 매우 많은 방정식들로 구성된 거시계량모형(macroeconometric models)을 이용하여 세제개편 및 재정지출 변경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EU에서 개발하여 정책모의실험에 활용하고 있는 QUESTⅡ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몇 차례 있었으며[40]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단기 일본경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41].

우선 EU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QUESTⅡ 모형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s)으로 신고전파-케인즈학파 종합(the Neoclassical-Keynesian Synthesis) 경제이론에 기반하여 최적화 원리, 스톡(stock)과 플로우(flow)간의 상호작용,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경제행태, 국가간 금융링크 등을 강조하여 개발된 15개 EU 국가와 미국, 일본, 기타 국가로 구성된 세계경제모형이다. 동 모형에서는 재정세입을 법인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에너지세·부가가치세·기타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이자지출·정부소비 및 투자·인건비·이전지출·실업급여지출·기타 지출로 구분하였다.

Roeger와 in't Veld가 QUESTⅡ 모형을 이용하여 ① 법인세 또는 ② 소득세 또는 ③ 부가가치세에 대해 GDP 1%에 상응하는 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각각 동일한 규모의 경상이전지출을 감축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모의 ④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⑤ 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경우 ⑥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는 OECD 보고서인

40) Roeger and in't Veld(1997a, 1997b, 1997c, 2002)를 참조하라.
41)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1998, 2001, 2003)를 참조하라.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에 소개되었다[42]. Roeger와 in't Veld는 6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 중앙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60년 후의 장기적 효과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세부담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가장 큰 반면, 부가가치세 감축이 가장 작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 소득세를 늘리는 것(모의실험 ④)보다 경상이전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보전하는 것(모의실험 ①)이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년 후의 GDP를 2.02%(스페인)~5.28%(미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0.034~0.088%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Xu(1999)의 일국가 모형과 비교해 보면 세계경제모형인 QUESTⅡ 모형에서는 한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이 무역거래나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spillover 효과) 정책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반면, QUESTⅡ 모형에서는 물가안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시키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는 측면도 있다.

동일한 정책대안에 대한 두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Xu(1999)의 정책모의실험 ⑤에서는 경제성장률을 0.0318~0.0412%포인트 변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QUESTⅡ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중 대안 ①에서는 0.034~0.088%의 경제상승률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의 모의실험은 상대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42) 보다 자세한 정책모의실험 내용에 대해서는 Roeger and in't Veld (1997c)를 참조하라. OECD, Revenue Statistics 2002의 통계를 이용하면 2000년 중 OECD 회원국들의 GDP 1%에 상응하는 세목별 세수규모는 소득세수(1100)의 10%, 법인세수(1200)의 27.8%, 부가가치세수(5110)의 14.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각 26.3%, 27.0%, 22.7%에 해당한다.

영향이 작은 부동산세 및 자본거래세를 포함하는 자본관련세수를 변경시킨 경우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만을 변경시킨 후자보다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43]

<표 Ⅵ-6> QUEST II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① 법인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모의실험 ② 소득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모의실험 ③ 부가가치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미 국	5.28	2.79	2.44	3.67	3.42	0.02	2.72	2.53	0.03
일 본	2.85	0.38	2.52	0.72	0.58	0.12	0.55	0.44	0.10
E U	3.09	1.06	2.18	2.08	1.83	0.06	1.46	1.28	0.06
독 일	3.16	1.13	2.12	2.40	2.10	0.11	1.64	1.41	0.10
프 랑 스	2.94	1.00	2.10	2.29	2.01	0.03	1.51	1.30	0.04
이 탈 리 아	2.74	0.78	2.15	1.69	1.47	0.06	1.22	1.05	0.06
영 국	4.30	1.81	2.54	2.39	2.26	-0.02	1.92	1.82	-0.02
오스트리아	2.27	0.56	1.89	1.23	1.06	0.07	0.87	0.74	0.06
벨 기 에	2.57	0.53	2.23	1.53	1.32	0.10	0.92	0.77	0.09
덴 마 크	2.98	0.89	2.42	1.91	1.59	0.08	1.36	1.12	0.07
핀 란 드	3.83	1.22	2.83	2.34	1.99	0.08	1.70	1.44	0.07
그 리 스	2.58	0.98	1.67	1.59	1.48	-0.02	1.23	1.14	-0.01
아 일 랜 드	3.94	1.99	1.94	3.24	2.89	0.09	2.51	2.22	0.09
네 덜 란 드	2.94	0.95	2.10	2.38	2.14	0.05	1.45	1.29	0.06
포 르 투 갈	2.64	1.04	1.74	1.71	1.55	-0.07	1.38	1.26	-0.06
스 페 인	2.02	0.39	1.80	0.91	0.76	0.07	0.66	0.54	0.07
스 웨 덴	3.90	0.99	3.34	2.23	1.85	0.13	1.56	1.27	0.12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

43) 법인세수는 총 자본관련세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Ⅵ-6]의 계속

	모의실험 ④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			모의실험 ⑤ 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모의실험 ⑥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미 국	2.49	0.26	2.41	0.96	0.91	-0.01	-1.64	0.59	-2.46
일 본	2.28	-0.06	2.42	0.17	0.15	0.02	-2.16	0.20	-2.44
E U	1.60	-0.22	2.13	0.64	0.57	0.00	-1.04	0.76	-2.16
독 일	1.49	-0.28	2.01	0.79	0.71	0.01	-0.79	0.97	-2.03
프 랑 스	1.39	-0.30	2.05	0.80	0.73	-0.02	-0.67	1.00	-2.10
이 탈 리 아	1.50	-0.27	2.09	0.50	0.44	0.00	-1.07	0.69	-2.12
영 국	2.32	-0.02	0.56	0.49	0.46	0.00	-1.93	0.44	-2.61
오스트리아	1.39	-0.18	1.83	0.37	0.33	0.01	-1.06	0.50	-1.85
벨 기 에	1.63	-0.24	2.14	0.63	0.57	0.01	-1.07	0.79	-2.17
덴 마 크	1.58	-0.23	2.35	0.56	0.48	0.01	-1.11	0.69	-2.38
핀 란 드	2.08	-0.22	2.76	0.66	0.57	0.01	-1.54	0.75	-2.80
그 리 스	1.32	-0.16	1.68	0.38	0.36	-0.01	-0.99	0.51	-1.71
아 일 랜 드	1.39	-0.23	1.86	0.76	0.69	0.01	-0.71	0.90	-1.88
네 덜 란 드	1.46	-0.33	2.04	0.94	0.87	-0.01	-0.61	1.17	-2.07
포 르 투 갈	1.24	-0.21	1.80	0.35	0.32	-0.01	-0.95	0.51	-1.83
스 페 인	1.35	-0.15	1.74	0.26	0.23	0.01	-1.12	0.38	-1.75
스 웨 덴	2.29	-0.29	3.22	0.70	0.59	0.02	-1.74	0.85	-3.28

출처: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2003)의 거시계량모형에 의하면 법인소득세 중 명목GDP의 1% 상당액을 지속적으로 감세할 경우(이는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10~14% 낮추는 효과가 있음) 실질GDP에 대한 효과는 투자의 확대(약 2.0~3.4% 정도)에 따라서 1년 후 0.4%, 2~3년 후 0.6% 정도(경제성장률로는 0.4%, 0.25%, -0.01%로 효과가 3년차에는 거의 사라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의 거시계량모형이 단기모형인 관계로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모의실험을 할 수 없었다.

<표 Ⅵ-7>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실질GDP(%)	실질GDP 증가율(%포인트)	명목GDP(%)	설비투자(%)
1년후	0.40	0.40	0.43	1.99
2년후	0.65	0.25	0.76	2.94
3년후	0.64	-0.01	0.84	3.37

출처 :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2003)

라. 투자함수의 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Jorgenson이 신고전파 투자이론을 발표한 1963년 이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법인세제 변화가 자본비용을 변화시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더라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all and Jorgenson(1967), Eisner(1969, 1970), Eisner and Nadiri(1968), Chirinko and Eisner(1983) 등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가속도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산 또는 매출액 변수는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금리나 법인세제 관련 변수들은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의 실증분석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설비투자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성공적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법인세제 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확정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다. 다만 최근의 연구들 가운데 다소 성과가 있었던 연구방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동안의 연구들에 대해 실증분석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기법 및 다양한 투자관련 데이터

를 이용하여 법인세제 개편효과를 재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선 투자와 자본비용간의 '장기적 관계'는 매우 유의하다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경우 자본비용에 대한 탄성치가 -0.4로 추정되었으며, Caballero(1994)는 하향편의(biased toward zero)를 수정할 경우 -1.0에 가까운 수치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세제 개편이 있었던 시기에 행해진 개별 기업들의 투자결정을 분석하여 자본비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는데,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4, 1996)에 따르면 법인세제 개편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안할 경우 14개 선진국의 q비율에 대한 탄성치가 0.03~0.1에서 0.09~0.8(평균 약 0.5)로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0.048에서 0.65로 상승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까지의 투자이론 및 이론모형의 정책모의실험에서는 현실 경제에 나타나는 법인세제가 기업들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누락된 요인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개별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매우 변덕스럽고 비가역적(irreversible)이므로 총투자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 기업의 투자행태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의 정도(the degree of coordination)가 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투자의 자본비용에 대한 탄성치가 -0.5~-1.0 정도로 나타났다[44].

2.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

국내에서는 최근 김유찬(2003)이 신고전파 투자모형에 의한 법인

44) Caballero, Engel and Haltiwanger(1995)를 참조하라.

세제 변동의 비교정태 분석을, 이인실 등(2002) 및 전영준(2003)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CGE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하의 정책모의실험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한국은행(1998) 등이 있었다.

우선 김유찬(2003)은 King-Fullerton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각종 투자지원정책을 감안한 한계 유효세율 모형을 이용하여 세전 필요자본수익률(P)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P=\frac{(1-A(t,g,r,a))\cdot(\rho+\delta-\pi)}{(1-t)}-\delta$$

여기서 A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준비금 설정 허용, 감가상각제도 등 각종 투자지원정책의 현재가치, t는 법인세율, g는 투자세액공제율, r은 자산가액에 대한 준비금 설정 비율, a는 감가상각률, ρ는 기업의 내부할인율, δ는 투자재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π는 물가상승률이다.

그는 모형에 포함된 파라미터에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값을 부여한 후 비교정태 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및 법인세제상의 각종 투자지원정책의 효과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P/dt=(\rho+\delta+\pi)/(1-t)(1-t)^{*}((a/(a+p))(t-1)$$
$$+1-(t+\gamma)a/(a+p)-g \quad =-0.3248$$
$$dP/dg=(-\rho+\delta-\pi)/(1-t) \quad =-0.3358$$
$$dP/dr=-(\rho+\delta-\pi)/(1-t)^{*}(a/(a+p)) \quad =-0.2916$$
$$dP/da=-(\rho+\delta-\pi)/(-1t)^{*}((t+r)\rho/(a+\rho)(a+\rho)) \quad =-0.0487$$

그러나 그의 분석결과 중 투자세액공제율, 투자준비금, 감가상각률을 인상하는 경우 세전 필요자본수익률을 인하시켜 투자에 도움

이 된다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하였으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전 필요자본수익률을 인하시켜 기업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감가상각률 등 그가 선정한 파라미터 값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5].

다음으로 CGE모형을 이용한 연구인 이인실 등(2002)에서는 ① 법인세율 인하+개인소득세율 인상 ② 법인세율 인하+부가가치세율 인상 ③ 법인세율 인하+정부소비지출 축소 ④ 법인세율 인하+가계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4가지 방안에 대하여 정책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4가지 방안 중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가계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보전하는 경우(방안 ④)에만 실질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지출 감축으로 감소한 법인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이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는 Xu(1999),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 등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나 정부소비지출 축소로 보전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상충된다.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법인세수를 30% 정도 줄일 경우 실질GDP가 0.096% 상승하여 Xu(1999) 및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의 추정결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전영준(2003)은 다소득계층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multi-income-class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

45) 물론 그가 부여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면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부록 3>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때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한계 유효세율이 하락하는데 설비투자가 이러한 한계 유효세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Schneiner는 'Taxation Paradox'라 명명한 바 있다.

<표 Ⅵ-8> 이인실 등(2002)의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법인세 인하 규모	실물경제에의 영향	
		산업생산 변화율	실질GDP 변화율
기 준		0.000	0.000
방안 ① 법인세율 인하 + 개인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포인트) 인하	-0.034	-0.016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포인트) 인하	-0.068	-0.033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포인트) 인하	-0.102	-0.049
	법인세수 40%(법인세율 10.8%포인트) 인하	-0.137	-0.066
	법인세수 50%(법인세율 13.5%포인트) 인하	-0.171	-0.082
방안 ② 법인세율 인하 +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포인트) 인하	-0.024	-0.012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포인트) 인하	-0.049	-0.024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포인트) 인하	-0.074	-0.036
	법인세수 40%(법인세율 10.8%포인트) 인하	-0.099	-0.048
	법인세수 50%(법인세율 13.5%포인트) 인하	-0.123	-0.059
방안 ③ 법인세율 인하 + 정부소비지출 축소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포인트) 인하	-0.049	-0.024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포인트) 인하	-0.076	-0.037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포인트) 인하	-0.102	-0.049
	법인세수 40%(법인세율 10.8%포인트) 인하	-0.129	-0.062
	법인세수 50%(법인세율 13.5%포인트) 인하	-0.155	-0.075
방안 ④ 법인세율 인하 + 가계에 대한 보조금 삭감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포인트) 인하	0.072	0.035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포인트) 인하	0.138	0.066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포인트) 인하	0.199	0.096
	법인세수 40%(법인세율 10.8%포인트) 인하	0.256	0.123
	법인세수 50%(법인세율 13.5%포인트) 인하	0.308	0.148

주: GDP증가율을 산업생산증가율에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식(GDP증가율=0.481132×산업생산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GDP증가율로 전환함.

용하여 법인세제 변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의 모형에서는 신고전파 투자모형에서처럼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등에 의한 신규투자의 한계비용(즉, 자본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는 법인세율을 2003년부터 평균세율 기준으로 현재의 25.7%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법인세수는 22.2% 감소)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는데[46], 실질

46) 또한 그는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가속감가상각제도를 통한 조세지원을 폐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의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GDP증대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크지만(2010년까지 누적 효과가 0.91%이므로 연평균 0.13%임) 31년 후에는 연평균 0.013%(법인세수 감소규모를 30%로 할 경우 0.018%임)로 Xu(1999) 및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의 추정결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CGE모형을 이용한 국내의 두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인실 등(2002)의 '방안 ④'에서 법인세수를 20% 인하하는 경우와 전영준(2003)의 '경제[5]'는 비슷한 규모로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GDP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 0.066%와 0.013%(단기효과는 0.13%임)로 크게 차이가 났다.

<표 Ⅵ-9> 전영준(2003)의 모의실험 결과

연도	실질GDP			자본스톡			실질투자		
	경제[1]	경제[5]	증가율	경제[1]	경제[5]	증가율	경제[1]	경제[5]	증가율
2003	49.53	49.92	0.79	208.62	210.06	0.69	25.52	26.23	2.79
2004	50.03	50.44	0.81	210.36	212.01	0.78	25.73	26.11	1.45
2005	50.45	50.87	0.83	212.19	214.01	0.86	26.02	26.38	1.39
2006	50.83	51.27	0.86	214.01	215.99	0.93	26.22	26.59	1.41
2007	51.21	51.66	0.87	215.72	217.87	0.99	26.33	26.72	1.48
2008	51.56	52.01	0.89	217.49	219.76	1.05	26.57	26.95	1.42
2009	51.88	52.35	0.90	219.21	221.61	1.09	26.73	27.11	1.43
2010	52.16	52.64	0.91	220.88	223.38	1.13	26.88	27.26	1.42
:	:	:	:	:	:	:	:	:	:
2134	39.47	39.62	0.39	164.78	166.47	1.02	18.47	18.74	1.45

주: 경제[1] : 현행제도 유지시
경제[5] : 법인세율을 2003년부터 25.7%(평균세율)에서 20%로 하향조정

한편, 한국은행(1998)에서는 한국의 재정모형을 개발하여 매년 법인세부담을 실제치보다 10%씩 낮출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해 보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GDP는 설비투자 등의 증가로 연평균 0.27% 증가하며[47]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모형은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모형과 같이 단기모형이므로 법인세 인하의 단기적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모의시험을 할 수 없었다.

나. 투자함수 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 패널자료 이용

제1절에서 살펴본 외국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설비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자함수와 같은 단일 방정식을 추정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부담의 변동이 기업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7개 국가의 패널 자료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함수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법인세율(statutory tax rate: 이하 'RATE'라 함),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 이하 'EATR'이라 함), 그리고 한계 유효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 이하 'EMTR'이라 함)의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한계 유효세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 유효세율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의 세부담 지표로 평균 유효세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법정세율을 근거로 향후 세부담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지표 모두를 사용하여 각각의 지표가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여기서 '평균 유효세율'

47) 앞에서 소개한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모형에 의한 효과(3년평균 0.56%)보다 훨씬 작다.

이란 법인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수를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명목GDP를 과세표준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투자재원의 조달금리(S)와 일치하는 최소한의 세후 투자수익률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한계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P라면 한계 유효세율은 $EMTR = \frac{P-S}{P}$로 계산된다. 한계 유효세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48].

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총 17개 OECD 회원국에 대해 198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하였으며 횡단면(cross-section) 분석 및 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좀더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료입수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국제투자 유치 측면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우 법인세부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우선 법인세부담, 성장 및 설비투자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를 국가별로 기간평균하여 비교해 보았다(<표 Ⅵ-10> 참조).

[그림 Ⅵ-1]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국가별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보면 법인세율 및 한계 유효세율(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이하 'EMTR1'이라 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평균 유효세율의 경우에는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48) 외국의 법정세율 자료는 Griffith and Klemm(2002)에서 인용하였으며, 법인세수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유효세율은 OECD *Revenue Statistics* 2003에서 구하였다. 그 외에 외국의 경제성장률, 장기 실질금리, 설비투자증가율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3에서 구하였다.

<표 Ⅵ-10> 횡단면 자료(국가별 1982~2001년 평균)

(단위 : %)

국 가	법인세율 (RATE)	평균 유효세율 (EATR)	한계 유효세율 (EMTR1)	한계 유효세율 (EMTR2)	경제성장률	설비투자 증가율
AUT	45.1	1.7	27.2	-63.6	2.5	4.7
BEL	41.7	2.8	26.9	-48.6	2.2	4.2
CAN	38.6	2.9	21.9	-48.1	3.0	4.4
FIN	40.6	2.3	26.6	-50.6	2.5	2.4
FRA	40.7	2.3	21.7	-52.4	2.2	3.4
GBR	35.6	3.7	19.2	-36.5	2.7	5.3
GER	57.8	1.6	38.7	-91.1	2.9	2.6
GRE	41.2	1.8	31.0	-42.9	2.0	3.9
IRE	10.0	2.3	4.5	-8.9	5.8	5.3
ITA	46.5	3.6	24.7	-66.9	2.1	3.4
JAP	50.5	5.1	40.8	-52.3	2.6	4.3
NET	38.2	3.4	26.9	-37.9	2.9	4.6
POR	43.5	2.9	30.7	-48.1	3.1	4.7
SPA	35.0	2.1	25.5	-33.5	3.0	5.6
SWE	40.7	2.3	26.2	-51.2	2.2	4.9
USA	41.6	2.2	23.1	-56.8	3.4	5.4
KOR	36.3	2.4	22.0	-48.8	7.3	8.4

주: 우리나라는 17개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은 14번째, 평균 유효세율은 8번째, 한계 유효세율(내부유보/주식발행)은 13번째, 한계 유효세율(차입)은 9번째로 높음.

차입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이하 'EMTR2'라 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차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대한 세법상 손금처리, 감가상각 등 세법상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로 인해 세전 실질수익률이 조달금리보다 낮더라도 투자가 가능해 즉, 한계 유효세율이 0보다 낮아 국가에 따라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한계 유효세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9].

분석기간을 1982~1991년 및 1992~2001년으로 구분해 보면 후

반기에 법인세율 및 EMTR1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 및 유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Ⅵ-2]에 나타난 설비투자 증가율과의 관계에서도 법정세율 및 EMTR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율 또는 EMTR1이 낮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분석기간을 1982~1991년 및 1992~2001년으로 구분해 보면 후반기에 법인세율 및 EMTR1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 및 유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부록 3>을 참조하라.

[그림 Ⅵ-0] 국가별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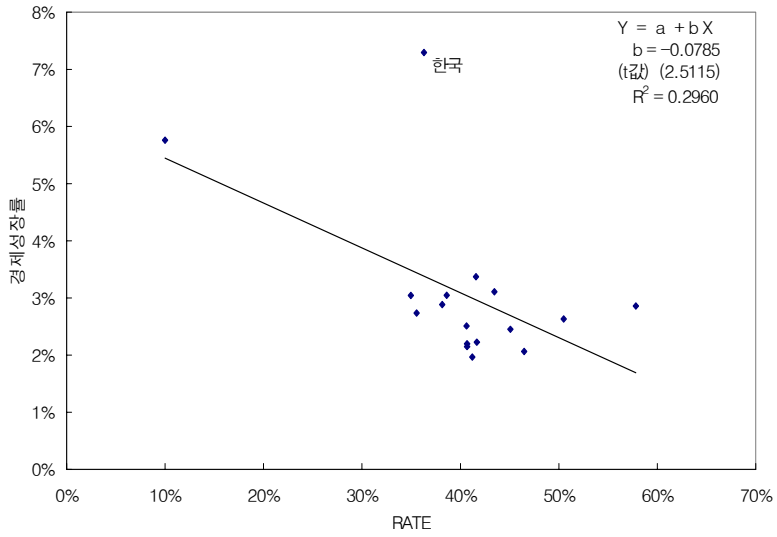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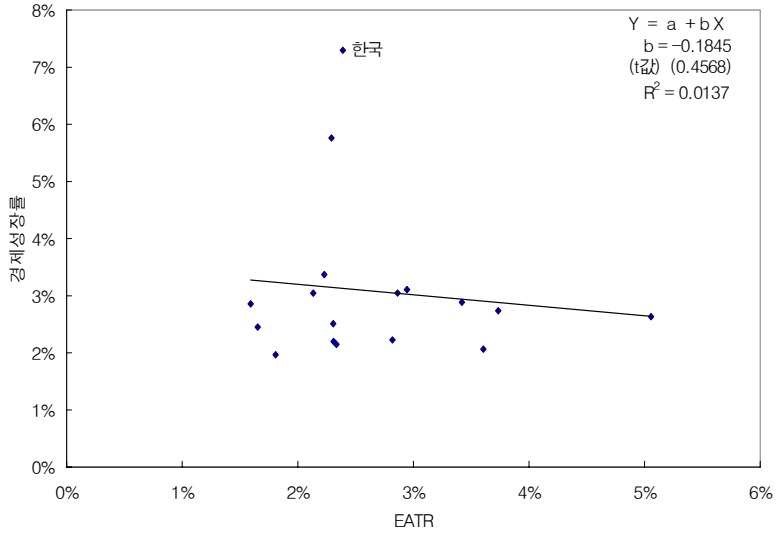

[그림 Ⅵ-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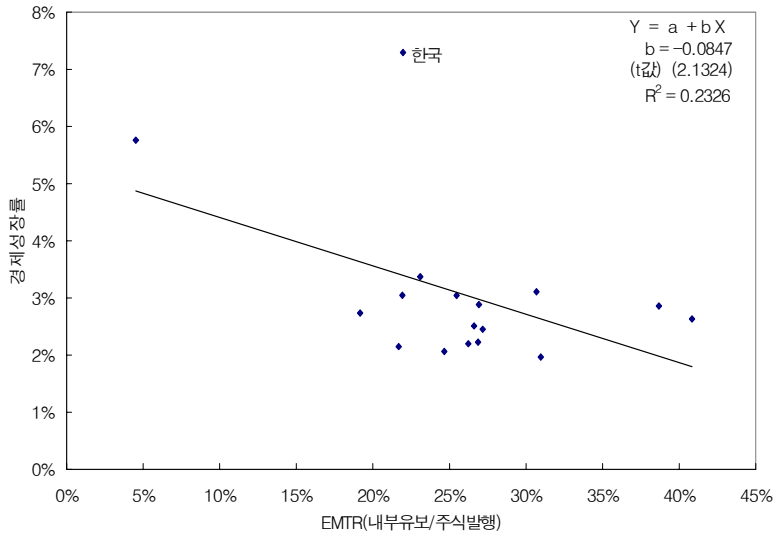
Y = a + b X
b = -0.0847
(t값) (2.1324)
R2 = 0.2326
한국
경제성장률
EMTR(내부유보/주식발행)
8%
7%
6%
5%
4%
3%
2%
1%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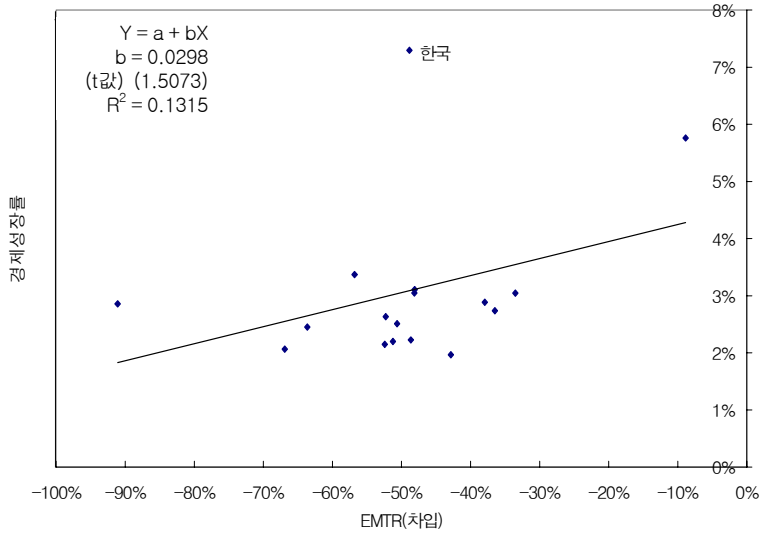
Y = a + bX
b = 0.0298
(t값) (1.5073)
R2 = 0.1315
한국
경제성장률
EMTR(차입)
8%
7%
6%
5%
4%
3%
2%
1%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림 Ⅵ-2] 국가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증가율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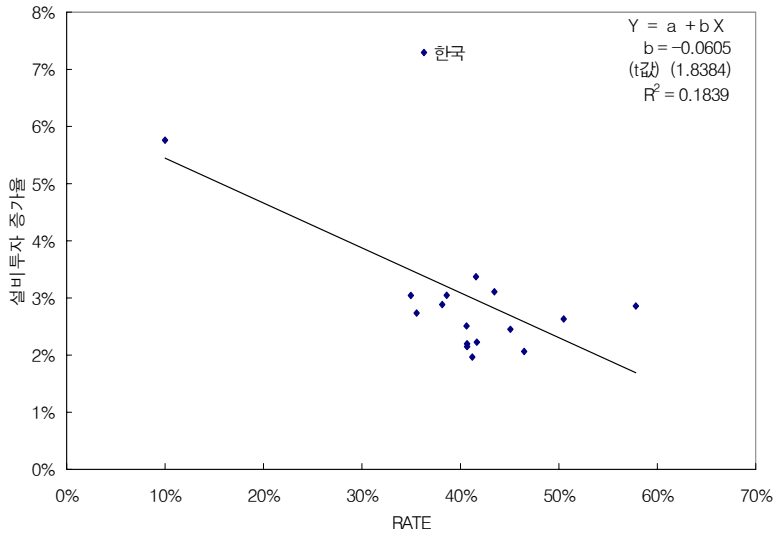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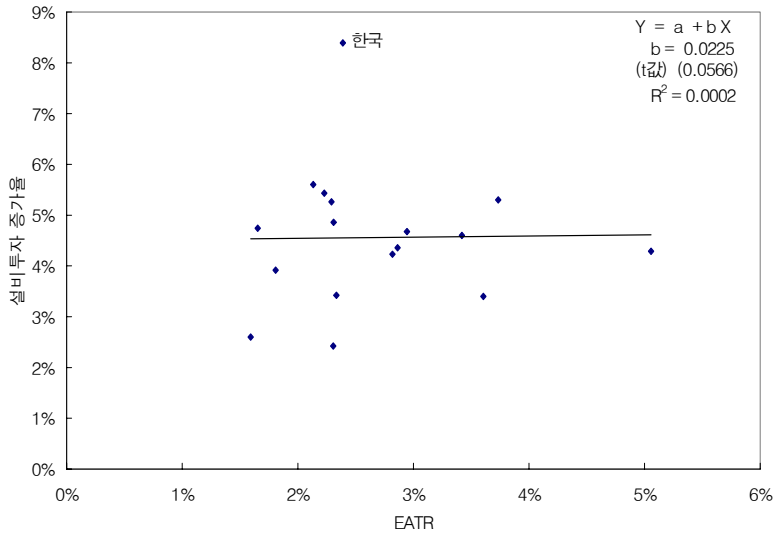

[그림 Ⅵ-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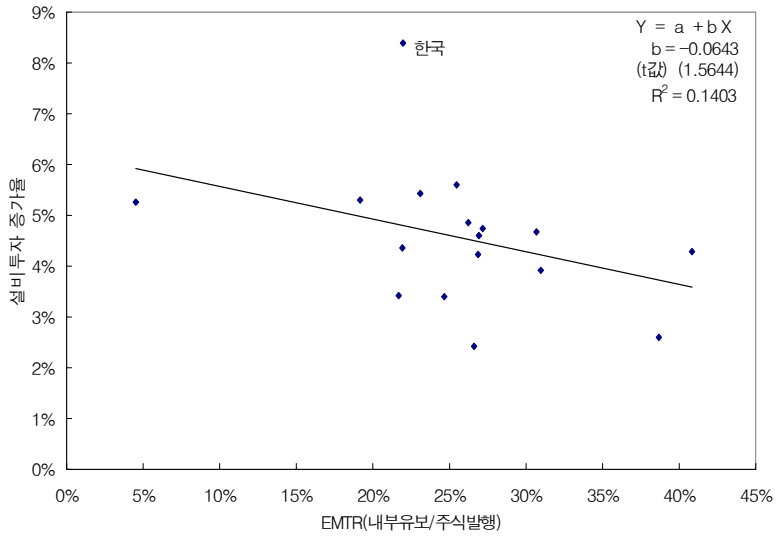
Y = a + b X
b = -0.0643
(t값) (1.5644)
R2 = 0.1403
한국
설비투자 증가율
EMTR(내부유보/주식발행)
9%
8%
7%
6%
5%
4%
3%
2%
1%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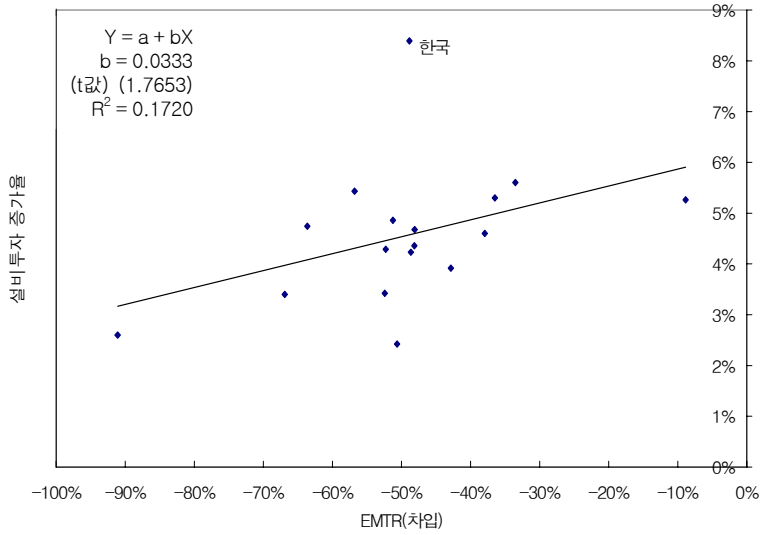
Y = a + bX
b = 0.0333
(t값) (1.7653)
R2 = 0.1720
한국
설비투자 증가율
EMTR(차입)
9%
8%
7%
6%
5%
4%
3%
2%
1%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표 Ⅵ-1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국가별 기간평균		
		1982~2001	1982~1991	1992~2001
경제성장률	RATE	-0.0785** (2.5115)	-0.0113 (0.2903)	-0.1315*** (5.0528)
	EATR	-0.1845 (0.4568)	0.0014 (0.3853)	0.1067 (0.1767)
	EMTR1	-0.0847** (2.1324)	0.0075 (0.1759)	-0.1647*** (4.4945)
	EMTR2	0.0298 (1.5073)	0.0036 (0.1808)	0.0547** (2.6313)
설비투자 증가율	RATE	-0.0605* (1.8384)	0.0419 (0.5638)	-0.1602*** (3.4269)
	EATR	0.0225 (0.0566)	0.0105 (1.6584)	-0.1141 (0.1295)
	EMTR1	-0.0643 (1.5644)	0.0569 (0.7051)	-0.1936*** (2.9856)
	EMTR2	0.0333* (1.7653)	-0.0077 (0.2029)	0.0823** (2.7534)

주: ( ) 안은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다음으로 가속도모형 및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입각하여 설비투자 증가율[50]을 경제성장률, 장기 실질금리 및 법인세율(RATE, EATR, EMTR1, EMTR2 중 하나)로 설명하는 random effect 모형[51]을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처럼 법인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법인세율 및 EMTR1의 경우 부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추정결과

50) 경제성장률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은 법인세율 이외에 국가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에 필요한 경제성장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17개 분석대상 국가들에 대한 물적자본, 인적자본, 물가상승률, 재정규모, 연구개발투자, 금융성숙도, 경제개방도 등의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시도할 수 없었다.

51) 개별 국가에 대한 random effect만을 고려하였다.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장기 실질금리를 설명변수에서 제외시킬 경우[52]에는 이러한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또는 EMTR1을 1%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이 0.05%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과거 분석대상 국가들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를 감안해 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표 Ⅵ-10> 및 <표 Ⅵ-12> 참조).

평균 유효세율의 경우에는 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EMTR2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패널 회귀분석의 추정기간을 1982~1991년 및 1992~2001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해 보았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52) 법인세부담 또는 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외국의 기존 연구 중에는 설명변수로 법인세부담 또는 자본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만을 포함시키거나(Cummins and Hasset(1992), Cummins, Hasset and Hubbard(1996), Hasset and Hubbard(1996), McKenzie and Thompson(1997) 등) 여기에 GDP를 추가한(Clark(1993), Goolsbee(2000) 등) 연구가 다수 있다.

<표 Ⅵ-12> 패널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장기 실질금리 제외시		
	1982~2001	1982~1991	1992~2001	1982~2001	1982~1991	1992~2001
(1) 법인세율						
경제성장률	2.4570 (19.1502)	2.3383 (17.2698)	2.4701 (18.9583)	2.4138 (19.4406)	2.2905 (17.6171)	2.4306 (19.2418)
장기 실질금리	-0.1528 (-0.9759)	-0.1926 (-1.2385)	-0.1322 (-0.8279)	-	-	-
법인세율	-0.0341* (-1.4480)	-0.0235 (-1.0563)	-0.0411* (-1.6629)	-0.0491** (-2.8691)	-0.0422** (-2.7074)	-0.0544** (-3.0313)
$\overline{R^2}$	0.5769	0.5358	0.5812	0.5700	0.5304	0.5741
(2) 평균유효세율						
경제성장률	2.4534 (18.1408)	2.3089 (16.0328)	2.4438 (17.9106)	2.3568 (18.0408)	2.2013 (15.9463)	2.3467 (17.7837)
장기 실질금리	-0.2607 (-2.0294)	-0.2964 (-2.3606)	-0.2777 (-2.1443)	-	-	-
평균 유효세율	-0.1927 (-0.7267)	-0.0460 (-0.1800)	-0.1780 (-0.6705)	-0.3495* (-1.4634)	-0.2720 (-1.2125)	-0.3550* (-1.4922)
$\overline{R^2}$	0.5740	0.5324	0.5757	0.5640	0.5215	0.5651
(3) 한계 유효세율(내부유보/주식발행)						
경제성장률	2.4269 (19.0828)	2.3193 (17.2785)	2.4231 (18.9010)	2.3629 (19.3379)	2.2478 (17.6318)	2.3573 (19.1403)
장기 실질금리	-0.2375 (-1.5880)	-0.2447 (-1.6503)	-0.2505 (-1.6601)	-	-	-
한계 유효세율1	-0.0244 (-0.7418)	-0.0201 (-0.6401)	-0.0236 (-0.7116)	-0.0573** (-2.3091)	-0.0530** (-2.3223)	-0.0581** (-2.3331)
$\overline{R^2}$	0.5734	0.5336	0.5757	0.5658	0.5265	0.5676
(4) 한계 유효세율(차입)						
경제성장률	2.4453 (19.2735)	2.3307 (17.3981)	2.4753 (19.0801)	2.3810 (19.7001)	2.2541 (17.9112)	2.4296 (19.4444)
장기 실질금리	-0.2096 (-1.4579)	-0.2418 (-1.7070)	-0.1466 (-0.9664)	-	-	-
한계 유효세율2	0.0140 (1.0008)	-0.0093 (0.6870)	0.0275* (1.6196)	0.0265** (2.2994)	0.0239** (2.2082)	0.0381** (2.8572)
$\overline{R^2}$	0.5761	0.5355	0.5822	0.5689	0.5287	0.5750

주: 1) ( ) 안은 t값이며 *, **는 10% 및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2) 법인세부담 지표를 제외시킬 경우(1982~2001년)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설비투자 증가율 = 2.4232 · 경제성장률 - 0.2864 · 장기 실질금리 $\overline{R^2}$=0.5762
(19.4272) (2.3734)

다. 투자함수 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

다음으로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한 장기 설비투자 식을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이하 'ECM'이라 함)으로 추정해 보았다[53]. 가속도모형 및 신고전파 투자이론, 기존 연구결과 등을 감안하여 설명변수로 법인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RATE, EATR, EMTR1, EMTR2 중 하나) 이외에 실질GDP, 실질환율(명목 원-달러 환율을 한국과 미국의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함), 실질금리(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에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함)를 포함시켰다[54]. 공적분 검정 및 단기 식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시차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및 Schwarz Criteria에 따라 2로 하였다.

<표 Ⅵ-13>에서 법인세부담을 고려하기 전인 기본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회귀계수의 부호가 모두 투자이론에 의한 예상과 일치하여 실질GDP는 설비투자에 정(+)의 영향을, 실질환율 및 실질금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 ECM에 의한 설비투자모형 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부담을 포함한 장기 설비투자 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한계 유효세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법인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한계 유효세율의 장기 탄성치가

---

53) 법정세율, 한계 유효세율의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에 대해서는 <부록 3>에 정리하였다. 평균 유효세율 자료는 OECD, *Revenue Statistics* 2003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이용하였다.

54) 외환위기 기간(1998~1999년)에 대한 더미변수도 포함시켰다.

EMTR1은 0.74, EMTR2는 0.03으로 나타났는데, 제2절에서 소개한 투자와 자본비용간의 장기 탄성치가 미국의 경우 Caballero (1994)는 0.4,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94, 1996)는 0.05(각각 하향편의를 수정할 경우에는 1.0 및 0.65로 증가함)로 나타난 것과 비교된다. 평균 유효세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실질금리를 제외시킬 경우에만 부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탄성치도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3] 법인세율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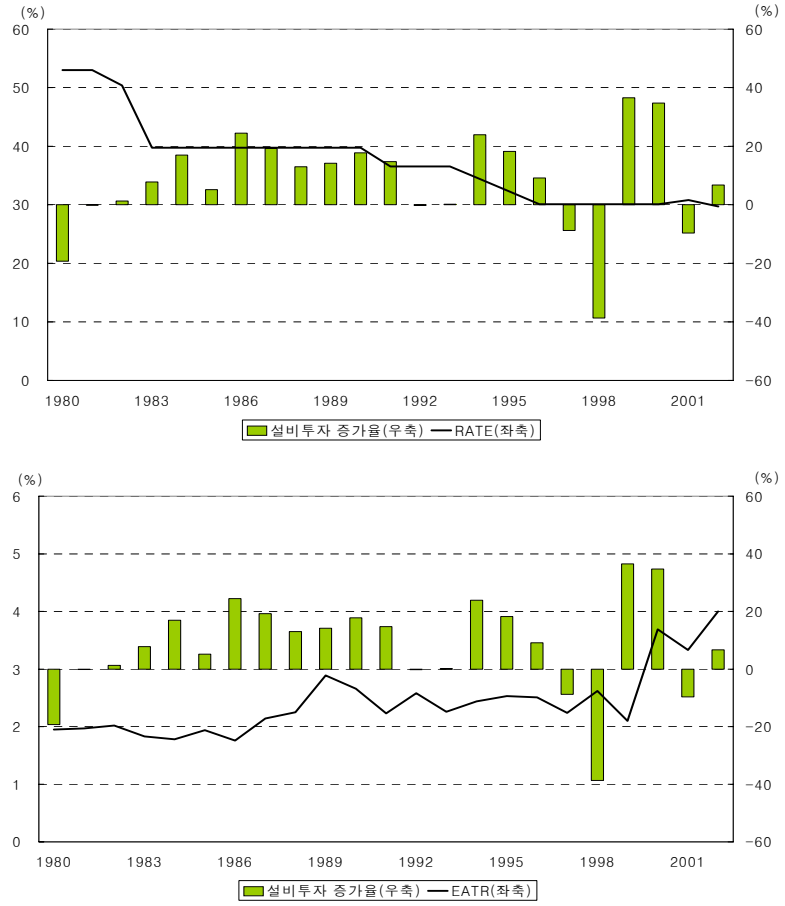

[그림 Ⅵ-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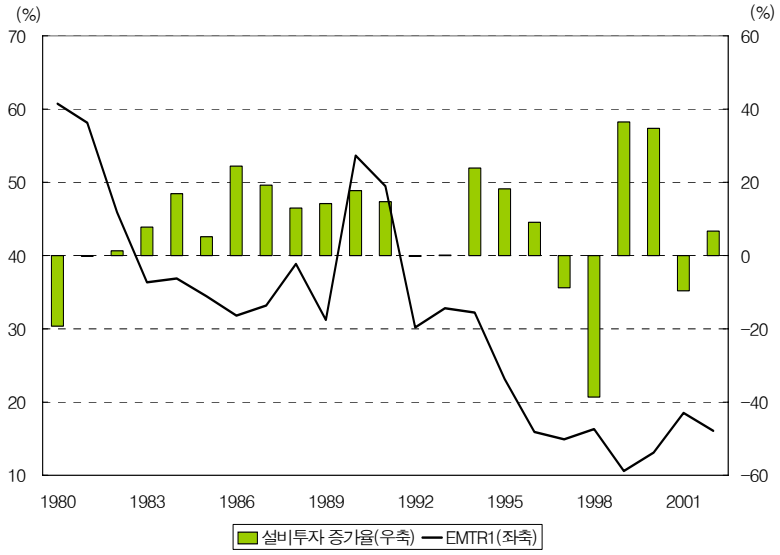
(%)
(%)
70
60
50
40
30
20
10
60
40
20
0
-20
-40
-6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설비투자 증가율(우축)
EMTR1(좌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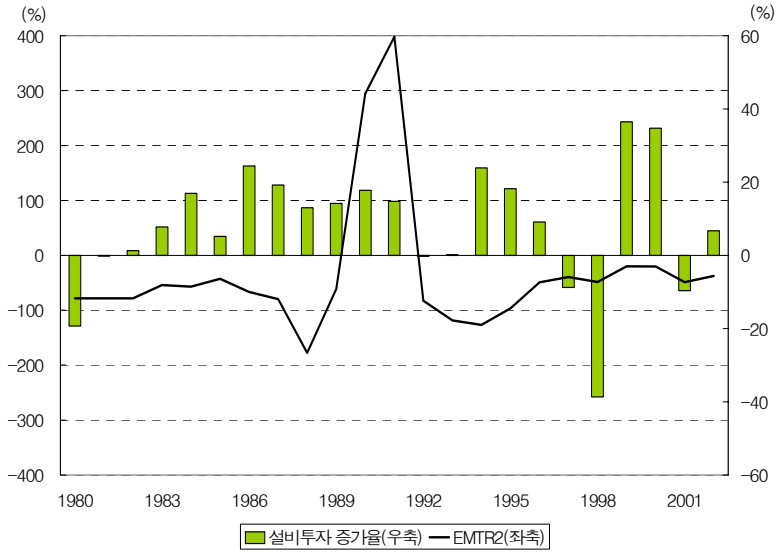
(%)
(%)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
60
40
20
0
-20
-40
-6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설비투자 증가율(우축)
EMTR2(좌축)

<표 Ⅵ-13> 장기 설비투자 식(ECM) 추정 결과

3. 시사점

요약해 보면 법인세부담 인하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의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단기적·중장기적으로 모두 효과가 있으나 국가에 따라, 분석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의 발표에 의하면 법인세부담을 명목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만큼씩 매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이러한 세수감소를 경상이전지출 축소로 보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연 0.03~0.09%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연 0.25~0.40%포인트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세부담 경감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는 연 0.02~0.09%포인트 정도, 5년 정도의 기간에는 연 0.18~0.7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17개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및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은 설비투자와 부(-)의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차입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설비투자와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Ⅵ-4]에서 보듯이 최근 국내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의 재원을 내부유보 등 자기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차입에 의한 투자자금 조달비중이 72.6%에서 23~24%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 충당금 등 내부자금을 통한 조달비중은 20%대에서 70%대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55]. 이렇게 법인세율 변동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

렷하고 그 크기도 큰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논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Ⅵ-4] 제조업의 설비투자 재원조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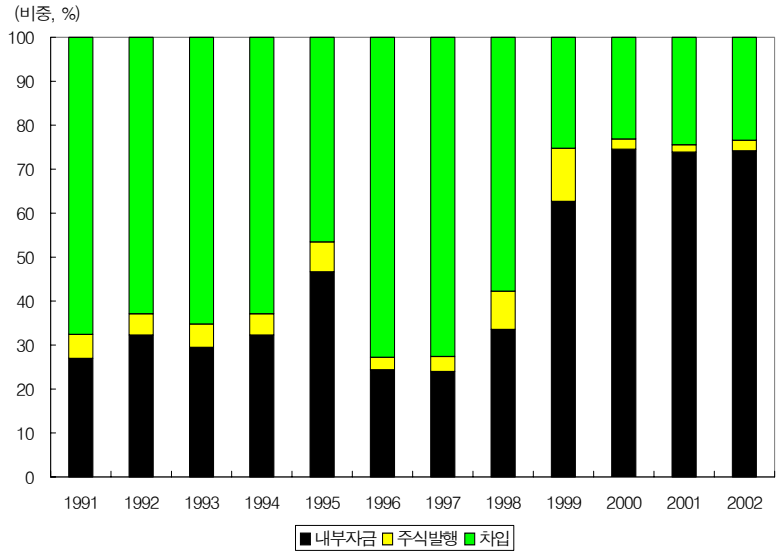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조사』, 각호

55)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내실 위주 경영을 강화하면서 투자결정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데다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Ⅶ.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본장에서는 만약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이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해 보고, 이러한 세수감소가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본다. 일반균형모형 또는 거시계량모형에서는 법인세부담 인하로 인한 재원 부족을 국채발행, 경상이전지출 축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쇄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단순하게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재정에 직접적으로 주는 충격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56].

1.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우선 2004년중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현행 27%(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에서 25%(13%)로 2%포인트 정도 인하할 경우를 가상하여 중앙정부의 법인세수 및

56) 본 연구에서는 조세수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만을 계산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나 고용,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세수입이 변동할 수 있는 경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의 분석을 보면 간접적 효과의 절대규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이러한 세율변경으로 야기되는 행태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정립된 모형이나 방법론이 없으며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연구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지방정부의 주민세수 감소규모를 추산해 보았다[57].

2003년도 예산상의 법인세 세입규모는 21.6조원인데 단순히 최고세율 27%에 대해 1%에 해당하는 세입규모는 8,000억원이므로 2% 포인트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규모는 약 1.6조원[58]으로 법인세 총세수의 7.4%에 달한다.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수 감소규모는 1,600억원으로 2003년도 총 지방세수입 33.4조원의 0.5% 정도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가 항구적이라면 2005년부터 매년 법인세수는 7.4%씩, 지방세수는 0.5%씩 감소할 것이다.

2. 재정에 미치는 영향[59]

가. 기준선 전망

우선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7) 한편 법인세율 인하시 개인소득에서 법인소득으로의 소득이전(income shifting)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수도 감소하여 총세수 감소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58)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02년)에 따르면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분의 과세표준(법인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공제감면소득을 차감한 '차감과세표준소득' 기준임)은 64조원이었으며 저자의 전망에 따르면 2003년에는 79.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다면 세수는 약 1.6조원 줄어든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세후 이익이 증가한 법인이 배당을 늘린다면 배당소득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산정시 배당소득 수입에 대해 19%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배당률도 매우 낮아 배당소득세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03년도 예산상의 배당소득세수는 7,441억원이다.

59) 제1절에서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계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데다 지방정부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 재배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분석을 생략하였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재정의 기준선 전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에 본원에서 실시한 중기재정전망(2004~2008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60].

기준선 전망결과를 보면 2004~2008년의 통합재정수지는 기본적으로 흑자기조이다. 흑자규모는 2004년 23.3조원에서 2008년에는 37.1조원으로 증가하고 명목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비중도 3.2~4.1% 정도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대부분 아직 기금적립 단계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면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워진다. 국민연금기금 제외시 통합재정수지는 2004년에 0.8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05~2006년에는 적자로 반전되어 적자규모가 1.0~1.9조원에 이르고 2007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Ⅶ-1> 기준선 전망

(단위 :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수입	184.9	199.0	219.1	238.1	257.8
총지출 및 순융자	161.6	175.4	191.6	206.7	220.7
통합재정수지	23.3	23.6	27.4	31.4	37.1
(국민연금기금 제외)	(0.8)	(-1.9)	(-1.0)	(0.2)	(3.0)
통합재정수지/명목GDP	3.43	3.23	3.49	3.72	4.10
(국민연금기금 제외)	(0.12)	(-0.25)	(-0.12)	(0.03)	(0.33)
국가채무(중앙정부)	165.1	186.8	204.2	200.6	194.1
국가채무/명목GDP	24.3	25.6	26.0	23.8	21.4

한편,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규모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명목DP 대비 비율도 2006년에 26.0%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반전될

60) 기준선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 등(2003)을 참조하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균형을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매년 12조원씩 정부보증채인 예금보험공사채 및 자산관리공사채를 국채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 법인세수가 기준선 전망보다 7.4%씩 줄어들게 되는데 연차별 감세규모는 <표 Ⅶ-2>와 같으며 2005~2008년 기간중 누계로는 약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제하였다.

<표 Ⅶ-2> 감세방안에 따른 세제개편시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가정

(단위 : 조원)

	2005	2006	2007	2008	누계
세수감소 규모	-1.81	-2.06	-2.27	-2.47	-8.61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2005~2008년 동안 연간 1.8~2.5조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면 통합재정수지는 연간 1.4~2.2조원 정도, 2005~2008년 기간중 누계로는 약 7.2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로 반전되는 연도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되어 2005~2006년 동안에는 3조원 내외, 2007년에는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0.2~0.4%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국가채무도 2008년 말 기준으로 기준선 전망보다 약 7.2조원(명목GDP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8.61조원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이보다 작은 7.16조원이 악화되는 이유는 2005~2008년 동안 8.61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지면 직접적으로 재정수지가 8.61조원만큼 악화되지만,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지원 지출의 감소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지급이자의 증가를 압도하여 총지출 및 순융자가 1.45조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법인세수가 1.81조원 감소한다고 하자. 이는 직접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1.81조원 악화시킨다. 그런데 법인세가 포함된 내국세의 감소는 2005년중 지방재정지원 지출규모를 0.46조원 감소시켜 순효과는 1.35조원으로 줄어든다. 2005년중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2006년중 지급이자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가부채 증가가 누적적으로 나타나 점차 그 크기가 커진다.

<표 Ⅶ-3> 국세 감세시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조원, %)

	수정 전망치					기준선 전망과의 차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총수입	184.9	197.2	217.0	235.9	255.3	0.0	-1.8	-2.1	-2.2	-2.5	-8.6
총지출 및 순융자	161.6	174.9	191.2	206.4	220.4	0.0	-0.5	-0.4	-0.3	-0.3	-1.5
통합재정수지	23.3	22.3	25.8	29.5	34.9	0.0	-1.3	-1.6	-1.9	-2.2	-7.2
(국민연금기금 제외)	(0.8)	(-3.2)	(-2.6)	(-1.7)	(-0.7)	(0.0)	(-1.3)	(-1.6)	(-1.9)	(-2.2)	(-7.2)
통합재정수지/명목GDP	3.43	3.04	3.28	3.49	3.85	0.0	-0.2	-0.2	-0.2	-0.2	
(국민연금기금 제외)	(0.12)	(-0.44)	(-0.33)	(-0.20)	(-0.08)	(0.0)	(-0.2)	(-0.2)	(-0.2)	(-0.2)	
국가채무(중앙정부)	165.1	188.2	207.2	205.5	201.2	0.0	1.4	3.0	4.9	7.1	
국가채무/명목GDP	24.3	25.7	26.4	24.3	22.2	0.0	0.1	0.4	0.5	0.8	

Ⅷ. 요약 및 정책시사점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인근에 있는 경쟁국들의 지속적인 낮은 세율정책 등이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제적 논거가 되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 자체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설비투자 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가 되었다.

2003년 12월 국회에서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다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논의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주요 경쟁상대가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한편에서는 근본적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제 자체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즉, 유효세부담을 감소시킨다.

둘째, 세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킨다.

셋째,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국가경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넷째, 공공부문에서의 세수입 감소는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대체로 처음 세 가지 단계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면서 네 번째 단계의 효과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쪽은 처음 세 가지 단계의 효과,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반면 네 번째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와 주변의 경쟁국들에 대한 투자를 각각 1단위씩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부담이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은 감가상각 속도에 따라 24.9~30.6%인 데 비해 중국은 10.6~17.5%, 싱가포르는 5.3~10.4%, 말레이시아는 6.9~18.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콩의 경우 한계 유효세부담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명목세율의 차이와 함께 감가상각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말레이시아와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연차상각 외에도 10~60%의 기초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한 감가상각제도와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함께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한계

유효세부담이 0보다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주변국들보다 높으며, 그 세부담의 격차는 명목세율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한계 유효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는데, 현행 27%에서 2%포인트씩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계 유효세율도 1.9~2.2%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낮추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은 20%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며,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목표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법인세부담의 인하가 실제로 설비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외국과 국내의 문헌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 등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의 문헌조사 결과를 보면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모두 법인세부담 인하가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분석기법이나 분석에 이용된 모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 OECD 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명목 GDP의 1%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법인세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경상이전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3~0.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일한 방법의 법인세부담 경감

에 의해 경제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연 0.02~0.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17개 OECD 회원국들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투자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은 설비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욱 뚜렷하다. 차입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의 한계 유효세율은 설비투자와 정(+)의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설비투자자금 중 차입에 의해 조달되는 자금의 비중이 72.6%에서 외환위기 이후 23~24%로 감소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재정세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8~2.5조원 감소하여 4년 합계 8.6조원 정도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수입 감소는 통합재정수지를 연간 1.4~2.2조원 악화시켜 4년간 총 7.2조원의 재정압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는 시기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되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조원 정도, 2007년에는 2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GDP의 0.2~0.4%로 적지않은 규모이다. 채무도 2008년까지 기준선 전망보다 약 7.2조원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 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주변 경쟁국들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세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G-7 국가들, OECD 회원국, 아시아 주요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율 30%를 하한으로 세율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5%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국세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인 주민세를 합하면 총세율은 27.5%가 되어 아직도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함께 고려한 유효세율의 주변국과의 격차는 명목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세부담을 주변 경쟁국에 투자한 기업의 세부담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세율을 보다 큰 폭으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투자를 대폭 감소시키면 공공부문 투자감소 효과가 민간부문 투자증가 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인

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부문의 투자증가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을 자연적인 법인세 증가분으로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인하의 단기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보다 세수감소 대비 투자촉진 효과가 작다.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는 신규투자에 대한 세부담만을 인하하는 반면 명목세율 인하는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동등하게 인하하기 때문이다. 기존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분은 투자증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부의 세수입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더욱이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신규투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투자지원제도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나 세수감소도 초래하지 않는 반면,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세수감소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강만수,「법인세 폐지는 생존전략」, 조선일보, 2001. 12. 7일자

곽태원,『조세론』, 법문사, 2000.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2.

_____,『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 안내-말레이지아』, 1997.

김유찬,「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 세무학회 발표자료, 2003. 10. 18.

_____,『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94-10, 한국조세연구원, 19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최신 중국조세제도 해설집』, 2003.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www.mida.gov.my/guide-04.html

법제처, www.moleg.go.kr

산동회계법인,『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중심 중국의 회계와 조세제도』, 1997.

성명재・박형수・전병목・박기백・김현아(2003),『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3-01

안종석,「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재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1998.

_____,「법인세에 대한 개념의 변화」,『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7. 1.

_____,『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4-12, 한국조세연구원, 1994.

안종석・최준욱,『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윤건영・김종웅,「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이상일,『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중국(홍콩) 투자실무지침-투자에서 회수까지』, 삼정 KPMG, 2002.
이인실・김성태・안종범・이상돈(2002),『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02-14.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단기 일본경제 거시계량모델의 구조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경제분석』, 제157호, 1998.
_____,「단기 일본경제 거시계량모델(2001년 잠정판)의 구조와 승수분석」,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6, 2001.
_____,「단기 일본경제 거시계량모델(2003년 잠정판)의 구조와 승수분석」,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75, 2003.
재정경제부,『조세개요 2003』
전영준,「GC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경제분석』 제9권 2호, 2003. pp. 135~182.
조세편람사,『조세편람』, 2003.
최 광,「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1.
최명근,「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의견」, 2002.
통계청, kosis.nso.go.kr
한국수출입은행,『싱가포르 투자가이드』, 1998.
한국은행,「한국의 재정모형」, 한국은행『경제분석』 제4권 3호., 1998.
_____,『기업경영분석』, 2002.
한국조세연구원,『조세관련통계자료집』, 2000.
稻垣光隆,『圖說 日本の稅制』, 2002.
Abel, A.B., Investment and the Value of Capital, Garland, New York, 1979.
_____,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 Benjamin M.

Friedman and Frank H. Hahn,(eds).,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Vol. 2, North-Holland, Amsterdam, 1990. pp. 725~778.

Caballero, R.J., "Small Sample Bias and Adjustment Cos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 1, February, 1994: pp. 52~58.

Caley David and Harry Tchilinguirian, "Average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58, October 2000.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2003.

_____, *Malaysian Maste Tax Guide*, 2003.

Chennells, L. and R. Griffith, "Taxing Profits in a Changing Worl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97.

Chirinko, R.S., and R. Eisner, "Tax policy in major macroeconomic mode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1983, pp. 139~166.

Cummins, J.G., K.A. Hassett and R.G. Hubbard, "A Reconsideration of Investment Behavior Using Tax Reforms as Natural Experi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2), pp. 1~59.

_____, "Tax Reforms and Investment: a Cross-Country Comparis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2(1/2), October, 1996, pp. 237~273.

Devereux Michael, Rachel Griffith and Alexander Klemm, "Corporate Income Tax : Reforms and Tax Competition," *Economic Policy*, 2002, pp. 451~495.

Devereux, M.P., L. Lammersen and C. Spengel., "The Effective

Levels of Company Tax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0.

Devereux, M.P. and R. Griffith, "The Taxation of Discrete Investment Choices," Working Paper 98/16,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98b.

_____, "Taxes and the Location of Production: Evidence from a Panel of US Multinationa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8(3), 1998a, pp.335~367.

_____, "Evaluating Tax Policy for Location Decisi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 2003, pp. 107~126.

Eisner,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969, pp. 379~388.

_____,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Furthe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970, pp. 746~752.

Eisner, R., and M.I. Nadiri, "Investment Behavior and Neoclassical Theor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1968, pp. 369~382.

European Commission, "Company Taxation in the Internal Marke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1.

Friedman, Joel and Iris Lav "A Permanent Corporate Tax Rate Cut: The Wrong Medicine For Short-Term Economic Ill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September 26, 2001.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Hall, R.E., and D.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pp. 391

~414.

Hayashi, F., "Tobin's Marginal q and Average q: a Neoclassical interpretation," *Econometrica* 50, 1982, pp. 213~224.

Hyun, Jin Kwon, Yunhi Won and Ilho Yoo,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in Korea : 1960-1998,"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orking Paper 00-02, 2002.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James, S., "The Interaction of Inflation with a Canadian-Type Capital Tax System: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ncorporating Endogenous Leverage and Heterogeneous Household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4-01, 1994a.

_____, "Debt Reduction with Distorting Taxes and Incomplete Ricardianism: a Computab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W.B.P. Robson and W.M. Scarth (eds.), *Deficit Reduction What Pain, What Gain*, C.D. Howe Institute Policy Study, No. 23, 1994b.

James, S. and C. Matier, "The Long-Run Economic Impacts of Government Debt Reduction,"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5-08, 1995.

Jorgenson, D.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pp. 247~259.

Jorgenson, Dale and Ralph Landau,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Jorgenson, Dale W. and Kun-Young Yun,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Judd, K.L, "Short-Run Analysis of Fiscal Policy in a Perfect-Foresight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pp. 298~319.

King, M.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Lee, Young and Roger H.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03.

Leibfritz Willi, John Thornton and Alexandra Bibbee,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6, 1997.

Merette, M., "Income Taxes, Life-Cycles and Growth,"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mimeo, 1996.

_____, "Taxes, Life-Cycles and Growth: a Cross-Country Comparison",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1997.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Paris: OECD, 1991.

_____, *Revenue Statistics 2002*

_____, *Revenue Statistics 2003*

_____,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3*

_____, "Economics Department Paper on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DAFFE/CFA/wp2(2003)22, 2003.

Roeger Werner and Jan in't Veld "Eflects of Taxation in QUEST Ⅱ," in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Paris, 1997a.

_____, "Simalating Permanent Shocks with OUEST Ⅱ: Sensitivity of Results to Terminal Conditions," Paper Presented at TROLL 1997 Conference, Brassels, 1997b.

_____, "QUEST Ⅱ: A Mutli-Country Business Cycle and Growth Model," EC Economic Papers No. 123, 1997c.

_____, "Some Selected Simulation Experiments with the

European Commission's QUEST Model," EC Economic Papers No. 178, 2002.

Sinn, H-W., Capital Income Taxation as Resource Allocation, North-Holland, Amsterdam, 1987.

Summers, L.H., "Tax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a q-Theory Approa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1, pp. 67~127.

Turnovsky, S.J., *Methods of Macroeconomic Dynamics* MIT Press, Cambridge, 1995.

Tobin, J.,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Monetary Theor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969, pp. 15~29.

Xu, Jing., "The Dynamic Effects of Taxes and Government Spending in a Calibrated Canadian Endogenous Growth Model,"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7-02, 1997.

Xu, Jing,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A Cross-Country Comparison and Model Sensitivity Analysi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9-01, 1999.

<부록 3> 한계 유효세율의 계산

1. 계산방법

한계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개념인 한계 유효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은 기업관련 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ennells and Griffith(1997), Devereux and Griffith(1998a, 1998b), Devereux, Lammersen and Spengel(2000), European Commission(2001), Devereux, Griffith and Klemm(2002), Devereux and Griffith(2003) 등에서 이용되었던 King and Fullerton(1984)의 한계 유효세율 개념[61]을 보다 개선시킨 방법에 따라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였으며, 자료입수가 어려워 소득세가 한계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감안하지 못했다[62].

한계 유효세율은 한계투자에 요구되는 세전 실질수익률(the required pre-tax real rate of return earned on an investment project: 이하 '세전 필요수익률'이라 한다) P와 투자재원조달금리 또는 투자의 세후 실질수익률(the post-tax real rate of return earned by the supplier of finance: 이하 '세후 조달금리'라 한다) S를 추계한 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61) OECD(1991), Jorgenson and Landau(1993) 등에서 이용되었다.

62)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만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상이한 소득세제를 감안할 경우 두 세제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고려되어야 할 소득세제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30년의 기간 동안 각 국가별 자료를 입수하기도 어려웠다.

한계 유효세율(EMTR) = $\frac{P-S}{P}$

$$P=\frac{(1-A)}{(1-\tau)(1+\pi)}[\rho-\pi+\delta(1+\pi)]-\delta,$$

$$S=\frac{1+i}{1+\pi}-1$$

A(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τ(법인세율), π(물가상승률), ρ(할인률), δ(경제적 감가상각률), i(명목금리)임.

P의 계산에 필요한 A는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경우에 한정하며, ρ는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와 차입에 의한 투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63].

$A = \frac{\delta^T \cdot \tau \cdot (1+\rho)}{\rho+\delta^T}$ (여기서 T는 내용연수임)

$\rho = i$: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

$\rho = i \cdot (1-\tau)$: 차입

통상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한계 유효세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 유효세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위에 소개한 한계 유효세율 계산공식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세가지 경로를 통해 한계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감가상각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세법상의 손금처리가 없다면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전 필요수익률 P를 하락시켜 한계 유효세율을 하락시킨다. 둘째, 낮은 법인세율은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인 A도 하락시켜 한계 유효세율을 상승시킨다. 또한 감가상각 이외에 투자세액공제

63) P는 제Ⅵ장에서 제시한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세전 수익률인 (F′-8)와 같은 개념이다. 법인세율이 고정되어 있고 투자자단계의 세금이 없다면 제Ⅵ장의 (F′-9)는 P와 같아진다.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면 이것도 한계 유효세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한계 유효세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세법상의 감가상각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과다하고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오히려 한계 유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가상각제도만 고려하더라도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한계 유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1] 우리나라의 법정세율과 한계 유효세율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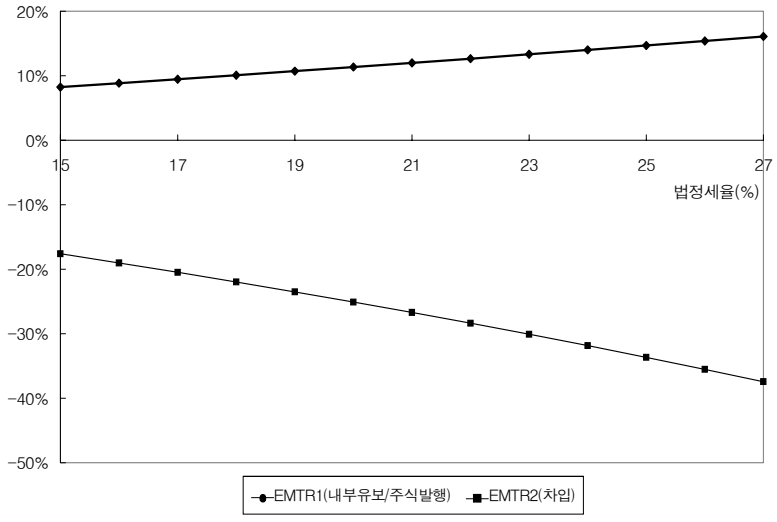

2. 계산과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KOR)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AUT), 벨기에(BEL), 캐나다(CAN), 핀란드(FIN), 프랑스(FRA), 영국(GBR), 독일(GER), 그리스(GRE), 아일랜드(IRE), 이탈리아(ITA), 일본(JAP), 네덜란드(NET), 포르투갈(POR), 스페인(SPA), 스웨덴(SWE), 미국(USA) 등 총 17개 OECD 회원국에 대해 한계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다. 한계 유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법인세율(지방세 등 부가세 포함), 감가상각률 등 국가별 법인세제는 <표 A-1> 및 <표 A-2>와 같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King and Fullerton (1984), OECD(1991), Jorgenson and Landau(1993)에서처럼 국제간 비교를 위해 <표 A-3>과 같이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3. 17개국에 대한 패널자료 계산결과

이렇게 계산된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들의 한계 유효세율을 <표 A-4>에 정리하였다. 설비투자자금을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면 조달금리(실질금리) 10%를 보상할 수 있는 세전 필요수익률은 법인세부담으로 인해 이보다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세전 필요수익률은 11.84%이나 법인세로 인해 세전 필요수익률이 15.52%로 높아진다 즉, 한계 유효세율이 15.52%이다.

그러나 차입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전 필요수익률이 8.73%로 조달금리보다 낮다. 따라서 한계 유효세율은 -42.58%로 0보다 낮은데 이는 분석대상 국가 모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표 A-1> 국가별 법인세율 및 감가상각률

(단위 : %)

연도	KOR	AUT	BEL	CAN	FIN	FRA	GBR	GER	GRE	IRE	ITA	JAP	NET	POR	SPA	SWE	USA
법인세율(지방세 등 부가세 포함)																	
1982	50.4	61.3	45.0	44.8	60.2	50.0	52.0	62.4	43.4	10.0	38.8	52.6	48.0	55.1	33.0	60.4	49.6
1983	39.8	61.3	45.0	44.2	60.2	50.0	50.0	62.6	43.4	10.0	41.3	54.7	48.0	55.1	33.0	60.4	49.6
1984	39.8	61.3	45.0	43.3	60.2	50.0	45.0	62.6	44.0	10.0	46.4	54.7	43.0	55.1	35.0	60.4	49.6
1985	39.8	61.3	45.0	45.1	60.2	50.0	40.0	62.6	44.0	10.0	46.4	54.7	43.0	55.1	35.0	60.4	49.6
1986	39.8	61.3	45.0	45.1	60.2	45.0	35.0	62.7	44.0	10.0	46.4	56.1	42.0	55.1	35.0	52.0	49.6
1987	39.8	61.3	43.0	42.4	50.2	45.0	35.0	62.7	44.0	10.0	46.4	56.1	42.0	45.9	35.0	52.0	38.4
1988	39.8	61.3	43.0	39.4	50.2	42.0	35.0	62.7	44.0	10.0	46.4	54.7	42.0	45.9	35.0	52.0	38.4
1989	39.8	39.1	43.0	38.4	50.2	39.0	35.0	62.7	40.0	10.0	46.4	52.6	35.0	40.2	35.0	57.0	38.4
1990	39.8	39.1	41.0	37.4	40.0	37.0	34.0	57.7	40.0	10.0	46.4	50.9	35.0	39.6	35.0	45.0	38.4
1991	36.6	39.1	39.0	36.4	40.0	34.0	33.0	59.3	40.0	10.0	47.8	50.9	35.0	39.6	38.4	30.0	38.4
1992	36.6	39.1	39.0	37.7	36.0	34.0	33.0	59.4	40.0	10.0	47.8	50.9	35.0	39.6	35.0	30.0	38.4
1993	36.6	39.1	39.0	35.3	25.0	33.3	33.0	57.8	40.0	10.0	52.2	50.9	35.0	39.6	35.0	30.0	39.3
1994	34.4	39.1	40.2	34.3	25.0	33.3	33.0	53.6	40.0	10.0	53.2	50.9	35.0	39.6	35.0	28.0	39.3
1995	32.3	34.0	40.2	35.6	25.0	36.7	33.0	56.6	40.0	10.0	53.2	50.0	35.0	39.6	35.0	28.0	39.3
1996	30.1	34.0	40.2	35.6	28.0	36.7	33.0	56.7	40.0	10.0	53.2	50.0	35.0	39.6	35.0	28.0	39.3
1997	30.1	34.0	40.2	35.6	28.0	41.7	31.0	56.8	40.0	10.0	53.2	50.0	35.0	39.6	35.0	28.0	39.3
1998	30.1	34.0	40.2	35.6	28.0	41.7	31.0	56.0	40.0	10.0	41.3	46.4	35.0	37.4	35.0	28.0	39.3
1999	30.1	34.0	40.2	35.6	28.0	40.0	30.0	51.6	40.0	10.0	41.3	40.9	35.0	37.4	35.0	28.0	39.3
2000	30.1	34.0	40.2	35.6	29.0	37.8	30.0	51.6	40.0	10.0	41.3	40.9	35.0	35.2	35.0	28.0	39.3
2001	30.8	34.0	40.2	34.6	29.0	36.4	30.0	38.3	37.5	10.0	40.3	40.9	35.0	35.2	35.0	28.0	39.3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1982	23.6	53.7	29.0	67.0	30.0	40.0	100.0	27.7	23.2	100.0	39.6	21.8	25.0	19.4	24.7	30.0	45.5
1983	23.6	53.7	29.0	50.7	30.0	39.7	100.0	32.4	23.2	100.0	39.6	21.8	25.0	19.4	24.7	30.0	45.5
1984	23.6	53.7	29.0	50.7	30.0	39.7	63.0	32.4	23.2	100.0	39.6	21.8	25.0	19.4	24.7	30.0	45.5
1985	23.6	53.7	29.0	50.7	30.0	39.7	44.0	32.4	23.2	100.0	39.6	21.8	25.0	19.4	27.8	30.0	45.5
1986	28.5	53.7	29.0	50.7	30.0	34.7	25.0	32.4	23.2	100.0	39.6	21.8	25.0	19.4	27.8	30.0	45.5
1987	28.5	53.7	29.0	50.7	30.0	34.7	25.0	32.4	23.2	100.0	39.6	21.8	25.0	19.4	27.8	30.0	30.5
1988	28.5	53.7	29.0	30.5	30.0	34.7	25.0	32.4	23.2	44.5	34.5	21.8	25.0	19.4	27.8	30.0	30.5
1989	28.5	19.3	29.0	28.5	30.0	34.7	25.0	32.4	23.2	25.5	34.5	21.8	25.0	31.2	23.0	30.0	30.5
1990	29.9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5.5	28.0	21.8	25.0	31.2	24.1	30.0	30.5
1991	29.9	19.3	29.0	21.2	30.0	34.7	25.0	32.4	23.2	15.8	28.0	21.8	25.0	31.2	24.1	30.0	30.5
1992	29.9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4.1	30.0	30.5
1993	29.9	19.3	29.0	24.9	30.0	34.7	30.9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4	29.9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5	36.5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6	39.3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7	39.3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8	39.3	19.3	29.0	24.9	30.0	34.7	25.0	32.4	23.2	23.2	28.0	21.8	25.0	31.2	22.2	30.0	30.5
1999	39.3	19.3	29.0	24.9	25.0	34.7	25.0	35.7	23.2	23.2	28.0	21.8	25.0	31.2	18.5	30.0	30.5
2000	34.8	19.3	29.0	24.9	25.0	34.7	25.0	35.7	23.2	23.2	28.0	21.8	25.0	31.2	18.5	30.0	30.5
2001	34.8	19.3	29.0	24.9	25.0	31.8	25.0	23.3	23.2	23.2	28.0	21.8	25.0	31.2	18.5	30.0	30.5

주: 법인세율은 Devereux, Griffth and Klemm(2002)에서 인용함.

<표 A-2>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및 감가상각률

(단위 : %)

	법정세율				법정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주민세 소득할	방위세	계	내용년수 (연)	잔존가치	특별상각률	감가상각률
1970	40.0	0.0	0.0	40.0	11.7	10.0	20.0	21.4
1971	40.0	0.0	0.0	40.0	11.7	10.0	20.0	21.4
1972	40.0	0.0	0.0	40.0	11.7	10.0	20.0	21.4
1973	40.0	5.0	0.0	42.0	10.5	10.0	20.0	23.6
1974	40.0	5.0	0.0	42.0	10.5	10.0	20.0	23.6
1975	40.0	5.0	25.0	52.0	10.5	10.0	20.0	23.6
1976	40.0	5.0	25.0	52.0	10.5	10.0	20.0	23.6
1977	40.0	7.5	25.0	53.0	10.5	10.0	20.0	23.6
1978	40.0	7.5	25.0	53.0	10.5	10.0	20.0	23.6
1979	40.0	7.5	25.0	53.0	10.5	10.0	20.0	23.6
1980	40.0	7.5	25.0	53.0	10.5	10.0	20.0	23.6
1981	40.0	7.5	25.0	53.0	10.5	10.0	20.0	23.6
1982	38.0	7.5	25.0	50.4	10.5	10.0	20.0	23.6
1983	30.0	7.5	25.0	39.8	10.5	10.0	20.0	23.6
1984	30.0	7.5	25.0	39.8	10.5	10.0	20.0	23.6
1985	30.0	7.5	25.0	39.8	10.5	10.0	20.0	23.6
1986	30.0	7.5	25.0	39.8	9.3	10.0	30.0	28.5
1987	30.0	7.5	25.0	39.8	9.3	10.0	30.0	28.5
1988	30.0	7.5	25.0	39.8	9.3	10.0	30.0	28.5
1989	30.0	7.5	25.0	39.8	9.3	10.0	30.0	28.5
1990	30.0	7.5	25.0	39.8	8.8	10.0	30.0	29.9
1991	34.0	7.5	0.0	36.6	8.8	10.0	30.0	29.9
1992	34.0	7.5	0.0	36.6	8.8	10.0	30.0	29.9
1993	34.0	7.5	0.0	36.6	8.8	10.0	30.0	29.9
1994	32.0	7.5	0.0	34.4	8.8	10.0	30.0	29.9
1995	30.0	7.5	0.0	32.3	6.6	5.0	0.0	36.5
1996	28.0	7.5	0.0	30.1	6.0	5.0	0.0	39.3
1997	28.0	7.5	0.0	30.1	6.0	5.0	0.0	39.3
1998	28.0	7.5	0.0	30.1	6.0	5.0	0.0	39.3
1999	28.0	7.5	0.0	30.1	6.0	5.0	0.0	39.3
2000	28.0	7.5	0.0	30.1	7.0	5.0	0.0	34.8
2001	28.0	10.0	0.0	30.8	7.0	5.0	0.0	34.8
2002	27.0	10.0	0.0	29.7	7.0	5.0	0.0	34.8

주: 1970~1998년 기간중의 내용연수는 Hyun et al.(2000)에서 인용함.

<표 A-3> 국가별로 동일한 변수에 대한 전제

(단위 : %)

변 수	수 치
δ(경제적 감가상각률)	12.25(설비투자), 3.61(건물)
π(물가상승률)	3.5
i-π(실질금리)	10

주 : Devereux, Griffth and Klemm(2002)에서 인용함.

4. 우리나라에 대한 시계열자료 계산결과

한편, <표 A-5>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적 감가상각률, 물가상승률, 금리를 특정수치로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 경제의 현실에 맞는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라 한계 유효세율의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계산에 사용된 법인세제는 <표 A-2>와 같으며, 기계설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윤건영・김종웅(1997)이 사용한 수치인 16.2%를, 물가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명목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이용하였다.

<표 A-4> 한계 유효세율 계산결과

(단위 : %)

	KOR	AUT	BEL	CAN	FIN	FRA	GBR	GER	GRE	IRE	ITA	JAP	NET	POR	SPA	SWE	USA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재원조달																
1982	38.9	25.0	29.6	9.3	42.7	25.5	0.0	47.1	32.9	0.0	18.1	42.8	35.4	47.8	22.8	42.9	21.8
1983	29.3	25.0	29.6	15.7	42.7	25.8	0.0	42.9	32.9	0.0	19.7	44.9	35.4	47.8	22.8	42.9	21.8
1984	29.3	25.0	29.6	15.2	42.7	25.8	10.8	43.0	33.4	0.0	23.2	44.9	31.0	47.8	24.4	42.9	21.8
1985	29.3	25.0	29.6	16.2	42.7	25.8	16.5	43.0	33.4	0.0	23.2	44.9	31.0	47.8	22.3	42.9	21.8
1986	25.5	25.0	29.6	16.2	42.7	25.3	24.3	43.0	33.4	0.0	23.2	46.3	30.1	47.8	22.3	34.8	21.8
1987	25.5	25.0	27.9	14.8	33.2	25.3	24.3	43.0	33.4	0.0	23.2	46.3	30.1	38.8	22.3	34.8	23.1
1988	25.5	25.0	27.9	23.9	33.2	23.1	24.3	43.1	33.4	3.1	26.5	44.9	30.1	38.8	22.3	34.8	23.1
1989	25.5	32.5	27.9	24.5	33.2	20.9	24.3	43.1	29.9	6.1	26.5	42.8	24.3	24.0	25.8	39.5	23.1
1990	24.6	32.5	26.3	26.3	24.7	19.6	23.5	38.0	29.9	6.1	31.4	41.2	24.3	23.5	24.9	28.7	23.1
1991	22.1	32.5	24.7	28.4	24.7	17.6	22.7	39.6	29.9	8.9	32.7	41.2	24.3	23.5	27.8	17.4	23.1
1992	22.1	32.5	24.7	26.6	21.7	17.6	22.7	39.7	29.9	6.6	32.7	41.2	24.3	23.5	24.9	17.4	23.1
1993	22.1	32.5	24.7	24.6	14.1	17.1	19.0	38.1	29.9	6.6	36.6	41.2	24.3	23.5	26.4	17.4	23.8
1994	20.5	32.5	25.6	23.8	14.1	17.1	22.7	34.2	29.9	6.6	37.6	41.2	24.3	23.5	26.4	16.1	23.8
1995	15.6	27.8	25.6	24.8	14.1	19.4	22.7	36.9	29.9	6.6	37.6	40.3	24.3	23.5	26.4	16.1	23.8
1996	13.2	27.8	25.6	24.8	16.1	19.4	22.7	37.1	29.9	6.6	37.6	40.3	24.3	23.5	26.4	16.1	23.8
1997	13.2	27.8	25.6	24.8	16.1	22.9	21.1	37.1	29.9	6.6	12.3	40.3	24.3	23.5	26.4	16.1	23.8
1998	13.2	27.8	25.6	24.8	16.1	22.9	21.1	36.4	29.9	6.6	14.9	36.9	24.3	21.9	26.4	16.1	23.8
1999	13.2	27.8	25.6	24.8	18.8	21.7	20.3	29.9	29.9	6.6	14.9	31.8	24.3	21.9	29.5	16.1	23.8
2000	15.1	17.4	25.6	24.8	19.5	20.1	20.3	29.9	29.9	6.6	12.0	31.8	24.3	20.3	29.5	16.1	23.8
2001	15.5	17.4	25.6	24.0	19.5	20.8	20.3	28.3	27.7	6.6	9.2	31.8	24.3	20.3	29.5	16.1	23.8
	차입으로 재원조달																
1982	-67.5	-126.4	-54.7	-72.0	-91.0	-71.3	-69.4	-98.0	-46.5	-12.9	-53.2	-55.6	-53.4	-60.5	-32.4	-91.7	-93.4
1983	-44.8	-126.4	-54.7	-72.7	-91.0	-73.6	-66.7	-106.1	-46.5	-12.9	-58.5	-59.7	-53.4	-60.5	-32.4	-91.7	-93.4
1984	-44.8	-126.4	-54.7	-70.4	-91.0	-73.6	-57.0	-106.2	-47.5	-12.9	-70.4	-59.7	-44.8	-60.5	-35.2	-91.7	-93.4
1985	-44.8	-126.4	-54.7	-75.1	-91.0	-73.6	-46.7	-106.4	-47.5	-12.9	-70.4	-59.7	-44.8	-60.5	-38.8	-91.7	-93.4
1986	-54.1	-126.4	-54.7	-75.1	-91.0	-59.7	-33.3	-106.6	-47.5	-12.9	-70.4	-62.7	-43.2	-60.5	-38.8	-68.7	-93.4
1987	-54.1	-126.4	-50.9	-68.1	-64.6	-59.7	-33.3	-106.6	-47.5	-12.9	-70.4	-62.7	-43.2	-43.0	-38.8	-68.7	-43.7
1988	-54.1	-126.4	-50.9	-47.1	-64.6	-53.7	-33.3	-106.7	-47.5	-10.1	-70.9	-59.7	-43.2	-43.0	-38.8	-68.7	-43.7
1989	-54.1	-33.2	-50.9	-44.9	-64.6	-48.2	-33.3	-106.7	-40.8	-7.2	-70.9	-55.6	-33.3	-46.6	-32.8	-81.4	-43.7
1990	-56.6	-33.2	-47.3	-39.3	-45.3	-44.7	-32.0	-89.2	-40.8	-7.2	-62.8	-52.4	-33.3	-45.7	-33.3	-54.0	-43.7
1991	-49.3	-33.2	-43.9	-32.9	-45.3	-39.8	-30.7	-94.4	-40.8	-4.3	-66.3	-52.4	-33.3	-45.7	-38.2	-30.7	-43.7
1992	-49.3	-33.2	-43.9	-39.8	-39.0	-39.8	-30.7	-94.7	-40.8	-7.1	-66.3	-52.4	-33.3	-45.7	-33.3	-30.7	-43.7
1993	-49.3	-33.2	-43.9	-36.1	-24.4	-38.7	-33.3	-89.5	-40.8	-7.1	-78.3	-52.4	-33.3	-45.7	-32.8	-30.7	-45.2
1994	-44.8	-33.2	-45.9	-34.6	-24.4	-38.7	-30.7	-77.4	-40.8	-7.1	-81.3	-52.4	-33.3	-45.7	-32.8	-28.1	-45.2
1995	-47.2	-27.0	-45.9	-36.5	-24.4	-44.2	-30.7	-85.7	-40.8	-7.1	-81.3	-50.8	-33.3	-45.7	-32.8	-28.1	-45.2
1996	-44.6	-27.0	-45.9	-36.5	-28.1	-44.2	-30.7	-86.1	-40.8	-7.1	-81.3	-50.8	-33.3	-45.7	-32.8	-28.1	-45.2
1997	-44.6	-27.0	-45.9	-36.5	-28.1	-53.2	-28.3	-86.3	-40.8	-7.1	-81.3	-50.8	-33.3	-45.7	-32.8	-28.1	-45.2
1998	-44.6	-27.0	-45.9	-36.5	-28.1	-53.2	-28.3	-84.1	-40.8	-7.1	-51.5	-44.9	-33.3	-42.1	-32.8	-28.1	-45.2
1999	-44.6	-27.0	-45.9	-36.5	-24.8	-50.0	-27.1	-77.4	-40.8	-7.1	-51.5	-36.9	-33.3	-42.1	-26.8	-28.1	-45.2
2000	-41.1	-27.0	-45.9	-36.5	-25.9	-46.0	-27.1	-77.4	-40.8	-7.1	-51.5	-36.9	-33.3	-38.7	-26.8	-28.1	-45.2
2001	-42.6	-27.0	-45.9	-35.1	-25.9	-42.1	-27.1	-36.8	-37.0	-7.1	-49.5	-36.9	-33.3	-38.7	-26.8	-28.1	-45.2

<표 A-5>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 계산결과

(단위 : %)

재원조달 방법	내부유보/주식발행	차 입
1982	45.9	-78.3
1983	36.3	-54.0
1984	36.9	-57.1
1985	34.5	-42.7
1986	31.8	-66.7
1987	33.2	-79.6
1988	38.9	-177.5
1989	31.2	-60.8
1990	53.7	294.5
1991	49.5	398.1
1992	30.2	-82.8
1993	32.8	-118.4
1994	32.2	-126.7
1995	23.1	-96.7
1996	15.9	-49.0
1997	14.9	-39.4
1998	16.3	-48.4
1999	10.6	-20.0
2000	13.1	-20.3
2001	18.5	-48.9
2002	16.1	-37.4

<국문초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2005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7%에서 25%로 2%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주요 경쟁상대가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한편에서는 근본적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세제 자체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 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가상각제도 등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주변 경쟁국들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명목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20%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세부담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다.

<Abstract>

Corporate Tax Rate Policy: Recent Trends and its Economic Effects

Jin Soo Kim, Hyung-soo Park, Jongseok An

The corporate tax rate in Korea i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in major capital exporting countries but higher than those in East Asian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of 2005, the corporate tax rate in Korea is scheduled to decrease by 2 percent point. But the total tax rate including local tax is going to be 27.5%, which is still higher than those prevailed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recent trends of policies on corporate tax rate not only in advanc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e the effective tax burden of firms in Korea with that of firms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burden on investment,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revenu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tax burden of firms in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firms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crease in statutory tax rate reduces the effective tax burden.

Second, if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reduce the effective tax burden to the level prevailed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 statutory tax rate should be equal to or lower than 20% under the current depreciation and other corporate tax rules.

Third, the alleviation of tax burden increases investment in the long run and accelerates economic growth.

Lastly, the fiscal burden followed by the tax cut might be considerably large in the short run.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is that, in order to promote investment and improve economic potentials, there should be a sharp decrease in the corporate tax rate.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be very cautious in performing tax cut. The tax cut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other measures to increase revenue or decrease expenditure maintain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one should note that tax cut policy might not increase investment unless the investment be elastic with respect to the after-tax rate of return.

<著者略歷>

金 珍 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硏究院 先任硏究委員

朴 炯 秀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硏究院 專門硏究委員

安 鍾 錫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Maryland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硏究院 硏究委員

硏究報告書 03-05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2003年 12月 26日 印刷
2003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金珍洙·朴炯秀·安鍾錫
發行人 宋 大 熙
發行處 韓國租稅硏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印刷 一 志 社
ⓒ 韓國租稅硏究院 2003
ISBN 89-8191-247-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